

**2009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안)**

2010. 2.

환경노동위원회

- 목 차 -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실시 대상기관	1
4. 감사위원회의 구성	2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5
6. 일반증인 출석 현황	7
7.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2
가. 시정 · 처리요구현황	12
(1) 환경부소관	12
(2) 노동부소관	28
(3) 기상청소관	36
나. 시정 · 처리요구사항	38
(1) 환경부소관	38
(2) 노동부소관	93
(3) 기상청소관	152
8. 감사 청구사항	160
9. 증인고발 사항	160

1.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2. 감사기간

- 2009. 10. 5(월) ~ 10. 24(토) (20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선정대상기관 (국정감·조사법 제7조제1호~제3호)	본회의승인대상기관 (국정감·조사법 제7조제4호)
1. 환경부 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3. 국립환경과학원 4. 국립생물자원관 5. 국립환경인력개발원 6. 기상청 7. 국립기상연구소 8. 국가기상위성센터 9. 노동부 10. 중앙노동위원회 11.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12. 서울특별시 <p style="text-align: center;"><이상 12개 기관></p>	1. 지방행정기관(20개 기관) 가. 유역환경청(4개 청)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유역 나. 지방환경청(4개 청) ◦ 수도권대기, 원주, 대구, 전주 다. 지방기상청(6개 청) ◦ 부산, 광주, 대전, 강원, 제주, 항공기상청 라. 지방노동청(6개 청) ◦ 서울, 부산, 대구, 경기, 광주, 대전 2.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13개 기관) 가. 한국환경자원공사 나. 환경관리공단 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바. 근로복지공단 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차. 한국고용정보원 카. 한국산재의료원 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p style="text-align: center;"><이상 33개 기관></p>

4. 감사위원회의 구성

가. 감사위원(단일반)

감사위원장	추미애 위원장	(민주당)
감사위원	조원진 위원	(한나라당)
”	강성천 ”	”
”	박대해 ”	”
”	박준선 ”	”
”	이두아 ”	”
”	이화수 ”	”
”	전재희 ”	”
”	조해진 ”	”
”	김재윤 위원	(민주당)
”	김상희 ”	”
”	원혜영 ”	”
”	권선택 위원	(비교섭단체)
”	홍희덕 위원	(비교섭단체)

나. 사무보조자 : 이 병 길 (수석전문위원)
 원 창 희 (전문위원)
 방 건 환 (입법조사관)
 유 세 환 (")
 김 대 안 (")
 김 소 정 (")
 정 석 배 (")
 구 본 근 (")
 이 보 림 (")
 손 명 동 (")
 최 병 근 (입법조사관보)
 김 현 수 (")

다. 속 기 사 : 조선욱 남미경 박윤희 최성향 신재선 류태문

라.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2급 상당	봉 종 근	(한나라당)
4급 상당	윤 선 형	(한나라당)
2급 상당	노 향 래	(민주당)
2급 상당	김 상 진	(민주당)

마. 감사위원 보좌진

유 성 훈	보좌관	(추미애 위원장실)
윤 치 업	보좌관	(조원진 의원실)
김 홍 석	보좌관	(강성천 의원실)
이 준 우	보좌관	(박대해 의원실)
남 택 신	보좌관	(박준선 의원실)
반 형 결	보좌관	(이두아 의원실)
이 주 천	비 서	(이화수 의원실)
박 사 현	비 서	(전재희 의원실)
정 세 영	비서관	(조해진 의원실)
서 경 선	보좌관	(김재윤 의원실)
박 홍 근	보좌관	(김상희 의원실)
유 윤 진	보좌관	(원혜영 의원실)
김 동 환	비서관	(권선택 의원실)
김 인 수	보좌관	(홍희덕 의원실)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자	시간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10월 5일(월)		자 료 준 비		
10월 6일 (화)	10:00	환 경 부	환경부 회의실	
10월 7일 (수)	10:00	노 동 부	노동부 회의실	
10월 8일 (목)	10:00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청 경인지방노동청	국 회	11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배석
10월 9일 (금)	10:00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국 회	<현장시찰> 여주 바위늪구비, 여주보 예정지 (14:00)
10월 10일(토) ~ 10월 11일(일)		공 휴 일		
10월 12일 (월)	14:0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 회	
10월 13일 (화)	10:00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 부산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항공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회의실 (충북 진천)	<현장시찰> 기상위성센터 현장
10월 14일 (수)	10:00	부산지방노동청 대구지방노동청	부산지방노동청 회의실	서울→부산(항공기) <현장시찰> 삼락, 염막습지 부산→서울(항공기)
	14:00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일자	시간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10월 15일(목)		자 료 정 리		
10월 16일 (금)	10:00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산재의료원	한국산업안전보건 공단 회의실 (인천 부평)	<현장시찰> 사회적기업 현장
10월 17일(토) ~ 10월 18일(일)		공 휴 일		
10월 19일 (월)	10:00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전주지방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회의실	서울 → 광주(항공기) <현장시찰> 광양제철 동호안 매립지 광주 → 광양(버스) 광양 → 전주(버스) 【전주 1박】
10월 20일 (화)	10:00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폴리텍(익산) 회의실	전주 → 익산(버스) 익산 → 서울(KTX)
	14:00	광주지방노동청 대전지방노동청		
10월 21일 (수)	14:00	서울특별시	현 장	<현장시찰> 서울특별시 현장시찰 ※서울시 국감은 현장시찰로 대체함
10월 22일 (목)	10:00	환 경 부	국 회	
10월 23일 (금)	10:00	노 동 부	국 회	

6. 일반증인 출석현황

【환경 분야】

(단위 : 인)

요구의원	증인	참고인	계
교섭단체 공통요구	11	33	44
계	11	33	44

【노동 분야】

(단위 : 인)

요구의원	증인	참고인	계
교섭단체 공통요구	12	5	17
계	12	5	17

※ 총 61인 (증인 23인, 참고인 38인 : 참고인 중 3인은 복수 신청)

환경분야 증인·참고인

대상기관	구분	성명 직책	신문요지	출석
환경부 10. 6(월) 10:00	참고인	박재광 위스콘신대 교수	4대강사업 검증	○
	참고인	정동일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	"	○
	참고인	서규섭 팔당상수원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
	참고인	박창근 관동대학교 교수	"	○
	참고인	서동일 충남대 교수	"	○
	참고인	최병성 목사	4대강살리기사업 국민검증단 활동	○
	참고인	박영구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회장	정부의 석면관리종합대책에 대한 석면피해자들의 입장	×
한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10. 9(금) 10:00	참고인	안재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박사	유기농 재배 관련	○
	참고인	공동수 국립환경과학원 한강물환경연구소장	"	○
	참고인	송미영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원	4대강사업 검증	×
	참고인	이항진 여주환경연합 집행위원장	"	○
	증인	주수성 (주)원화건설 대표이사	강원도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
	참고인	이승현 원주녹색연합	"	○
한국환경자원공사 10. 12(월) 14:00	증인	심재일 이마트부문 판매본부장	출고실적 누락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부당이득	○
낙동강유역환경청 10. 14(수) 14:00	참고인	신현석 부산대 교수	4대강사업 검증	○
	참고인	신성교 부산발전연구원	"	○
	참고인	김좌관 부산카톨릭대학교 교수	"	○
	참고인	이준경 강살리기네트워크 사무처장	"	○

대상기관	구분	성명 직책	신문요지	출석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10. 19(월) 10:00 영산강청	참고인	유병로 한밭대 교수	4대강사업 검증	○
	참고인	정관수 충남대 교수	"	○
	참고인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	"	○
	참고인	정기영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장	"	×
	참고인	이용운 전남대 교수	"	○
	참고인	이경훈 전남대 교수	"	○
	참고인	박미경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
	참고인	이흥주 광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
	증인	조뇌하 광양제철소장	광양 동호안매립지 붕괴	○
	증인	오종택 인선ENT 사장	"	○
	증인	이인곤 전라남도 해양수산 환경국장	"	○
	참고인	박주식 광양신문기자	"	○
	증인	허형채 (사)광양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	"	○
서울특별시 10. 21(수) 14:00	증인	이덕수 서울특별시 제2부시장	석면 대책	○
	증인	이호조 성동구청 구청장	"	○
	참고인	최준섭 서울지방노동청장	"	○
	참고인	류미주 흥익어린이집 학부모	"	○
	참고인	백도명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	"	○

대상기관	구분	성명 직책	신문요지	출석
	참고인	한재균 (주)건화종합건축사 사무소 감리단장	"	○
환경부 10. 22(목) 10:00	증인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본부장	4대강사업 검증	○
	증인	안시권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	"	○
	증인	정영목 삼안 대표이사	4대강 사업관련 사전환경성 검토 적정성 검증	○
	참고인	박창근 관동대학교 교수	4대강사업 검증	○
	참고인	박재현 인제대학교 교수	"	×
	참고인	안재환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연구원	불법 경작지 관련 연구 보고서 검증	○
	참고인	서규섭 팔당상수원공동대책 위원회집행위원장	불법 경작지 관련 연구 보고서 검증	○
합계		증인 11인 , 참고인 33인		

노동분야 증인·참고인

대상기관	구분	성명 직책	신문요지	출석
노동부 10. 7(수) 10:00	참고인	이인실 통계청장	노동통계 관련	×
	참고인	오병태 통계청 사회통계국장	"	○
	증인	이경석 그린시티픽처스 프로듀서	임금체불건	○
	증인	이휘성 GS건설 대표이사	산재사망자 다수 발생 사업장	○
	증인	박희태 대림산업 상무이사	"	○
	증인	김병호 쌍용건설 대표이사	"	○
	참고인	이홍우 전국건설노조 조합원	건설현장 산재 관련	○
	증인	이병천 대한산업안전협회 관리이사	산업안전 관련 노동부 위탁업무 집행실태	○
	증인	권승혁 (주)리얼멤버스코리아 대표	고용지원정보센터 센터매입관련 적정성 검토	○
	증인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노동조합 탄압	○
서울지방노동청 경인지방노동청 10. 8(목) 10:00	증인	오승균 (주)서부발전 관리본부장	발전산업노조 부당노동행위 건	○
	증인	박노균 (주)서부발전 노조위원장	"	○
	증인	박영호 주식회사 콜텍 대표이사	위장폐업 부당해고	×
	증인	황인성 (주)에스디케이 대표이사	부당해고, 임금갈취 확인 및 근절	○
부산지방노동청 10. 14(수) 10:00	증인	조해석 메타예선(주) 대표이사	노조활동보장 성실단체교섭 촉구	
	참고인	장영귀 메타예선 메타3호 노동자(선장)	노동자 여부, 근로조건 실태 파악	○
광주지방노동청 10. 20(화) 14:00	참고인	장문규 금속노조 전남서남부 지회장	대불공단 내 사내하청 비정규직 실태	○
계		증인 12인 , 참고인 5인		

7.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가. 시정·처리 요구사항 현황

(1) 환경부 소관

시 정 요 구 현 황

<환경부 본부>

- (1)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분할납부로 인한 예산상 혼란 시정
- (2)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시정
- (3) 석면피해신고센터 운영 부실
- (4) 영산강청 국정원 보고 문제
- (5) 야생동물구조센터 부실 운영
- (6)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구선정의 그린벨트 해제 원칙 위반
- (7)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정화조치 명령 이행 미흡
- (8) 환경부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
- (9) 하천부지 유기농 경작지 대책 재검토
- (10) 남해화학 폐기물 침출수 유출

< 한강유역환경청 >

- (1) 화학테러 대비 훈련 실효성 제고
- (2) 폐금속 광산 주변 지역 오염확산 방지 및 대책 마련
- (3) 팔당호 유기농 경작 금지 재검토
- (4) 사전환경성검토 제도 철저 운영
- (5)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역특성화 운영

시 정 요 구 현 황

- (6) 수변구역 토지매수 제도개선
- (7) 시·군별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방안 강구

< 낙동강유역환경청 >

- (1) 석면피해신고센터 제 역할 촉구
- (2)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관리 강화
- (3) 환경영향평가 전 사전 공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금강유역환경청 >

- (1) 클린주유소 사업 시행 미흡
- (2) 폐기물처리업체 위반율 과다 시정
- (3) 폐석면 처리업체 (주)이솔루션 관련 민원 및 입지문제 해결
- (4) 공주 백제 큰다리보 제거 시정

< 영산강유역환경청 >

- (1) 동호안 매립지 관련 관리감독 철저
- (2)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개선
- (3) 신재생에너지시설 입지 검토 철저

< 수도권대기환경청 >

- (1)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과장
- (2) 녹색신용카드 발급실적 부진
- (3) 시화호 인근 아파트단지의 악취 저감
- (4) 수도권 미세먼지 대책
- (5) 대기오염 시·도별 배출허용 총량 과다 할당

시 정 요 구 현 황

< 원주지방환경청 >

- (1) 4대강 홍보 교육 시정
- (2) 사전환경성검토 부동의 급감 시정
- (3)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대기질 관리대책

< 전주지방환경청 >

- (1) 새만금 관광지 지정폐기물 매립장 허가 부적절
- (2) 군장국가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확장 재검토
- (3)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장설립지원 업무협약 체결 부적절

< 대구지방환경청 >

- (1) 포항 형산강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 퇴적물 대책
- (2) 영주댐 건설사업추진 재고
- (3) 1, 4 다이옥산 사고
- (4) 산업단지 토양·지하수 오염지역의 조속한 정화
- (5) 지방상수도 민간위탁 추진 시정
- (6) 왕피천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탐방로 조성 재고
- (7) 경천대 인근 자전거 도로 타당성 평가 재검토

< 국립환경과학원 >

- (1) 연구용역사업의 투명성 확보
- (2) 자료제출 비협조 시정 필요

시 정 요 구 현 황

< 국립생물자원관 >

- (1) 멸종 위기종 야생동물 보호 대책 마련
- (2) 생물자원 국외반출 대책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 (1) 환경교육의 내실화

< 한국환경자원공사 >

- (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련

< 환경관리공단 >

- (1) 지역편중인사 시정

< 국립공원관리공단 >

- (1)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전사고 방지
- (2) 북한산 국립공원 우이령길 탐방예약제 개선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 (1)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 CDM인증 문제
- (2)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 관련

처 리 요 구 현 황

<환경부 본부>

- (1) 학교시설의 라돈 문제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
- (2) 순환골재의 환경성 확보 대책
- (3) 나노물질 안전성 확보
- (4) 어도에 대한 종합적 개선책 마련
- (5)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RSD) 타당성 재검토
- (6) 왕궁축산단지 환경대책 마련
- (7) 비점오염방지사설의 개선대책
- (8) 전국 어린이 놀이터 환경 안전 강화
- (9) 군부대 오폐수 무단 방류 대책 마련
- (10) 각급 학교의 실내 환경 문제 개선
- (11) 산업단지 토양·지하수 오염대책
- (12) 생태하천복원사업의 개선 필요
- (13) 폐의약품 분리수거 개선방안
- (14)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기준 마련
- (15) 폐유 재활용 박리제의 유해물질 검출 대책
- (16)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의 문제
- (17) 국가수질자동측정망 운영 개선
- (18) 조류독감(AI) 매몰지 지하수 및 토양 오염 관리 강화
- (19) 빗물이용시설 확대 설치 방안 강구
- (20) 지하수 브롬산염에 대한 종합적 대책
- (21) 지정폐기물 매립장의 부족 및 편중 문제
- (22) 수질오염총량제 개선 필요

처 리 요 구 현 황

- (23) PCBs 함유폐기물 규제 합리화
- (24) 소각시설 다이옥신 기준치 초과
- (25) 폐자동차 재활용 비율 제고
- (26)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관리를 위한 RFID 시스템 도입
- (27) 폐기물 자원화 사업의 타당성
- (28) 고탄유 사용 허용 관련 대책
- (29) 여주공군사격장 환경오염 문제
- (30) 멧돼지 서식밀도 과다에 따른 문제
- (31) 생활폐기물 처리 장기수의계약
- (32)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제반 지적사항
- (33)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관리강화
- (34) 수영장, 목욕장, 온천 등의 수질관리
- (35) 음식물쓰레기 음폐수 처리 대책
- (36)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내역 변경
- (37)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 부실
- (38) 분수 수질관리 기준 마련
- (39)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의 배출수수료 면제 재검토 필요
- (40) 고물상의 소형 폐가전제품 취급 및 중국 등 수출 관리대책
- (41) 폐석면 광산 관리 철저
- (42) 흥익어린이집 관련 석면관리대책
- (43) 수돗물 가격 지역별 격차해소
- (44) 환경부 소관 자문위원회 회의실적 저조
- (45) 항공기소음기준 일원화

처 리 요 구 현 황

< 한강유역환경청 >

- (1) 팔당 인근 유기농으로 인한 하천 오염 관리
- (2) 시화호 저질토 처리 대책
- (3) 환경영향평가 인력 충원
- (4) 지하수 오염대책 마련
- (5)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 (6) 굴업도 골프장 건설에 따른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필요
- (7) 휴 · 폐광산 지하수 관리대책 마련
- (8) 불법 포획기구에 대한 단속 강화
- (9) 수질자동측정망 운영의 적정성 및 효율성 제고
- (10)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 성공을 위해 오염배출량 준수 필요
- (11) 환경감시단 확충 및 전문성 제고 필요

<낙동강유역환경청>

- (1) 부산지역 주민 혈중 수은농도 과다 대책 마련
- (2) 사전환경성검토 인력 보강
- (3)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 (4) 낙동강 둔치 · 경작 대책 마련
- (5) 울산시 대기질 개선 대책
- (6) 염막, 삼락 고수부지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
- (7) AI 살처분 매몰지 사후관리 철저
- (8) 수변구역 토지매수 사후관리대책 보완
- (9) 수계기금 신뢰성 제고

처 리 요 구 현 황

- (10) 진양호 조류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 (11) PCBs 폐변압기 처리 총체적 점검
- (12) 고성군 생활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유출 재발방지 대책

< 금강유역환경청 >

- (1) 대청호 조류발생 대책 마련
- (2) 폐금속광산 주변지역 토양·지하수 오염 방지대책 마련
- (3) 4대강 살리기사업 관련
- (4) (구)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에 대한 대책 마련
- (5) 금강권역 호소 수질 개선대책
- (6)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인력 보강
- (7) 화학테러 대응능력 제고
- (8) 충남지역 하수도보급률 확대

< 영산강유역환경청 >

- (1)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 (2) 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부정수급 방지 제도개선
- (3) 영산강 수질악화에 대한 대책 마련
- (4) 생태·경관 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관리 철저
- (5) 특정도서 모니터링, 방목가축 포획 등에 있어 안전대책

< 수도권대기환경청 >

- (1)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사업 활성화
- (2)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재제조 기술 개발
- (3) 이산화질소 삭감 대책 마련

처 리 요 구 현 황

(4)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관련 제도보완

< 원주지방환경청 >

- (1) 원주천 수질개선 대책 추진
- (2) 도암댐 유역 비점오염저감 철저
- (3) 불법 야생동물밀렵으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대책 마련
- (4) 폐금속광산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5) 국내 및 수입 석탄재에 대한 관리강화
- (6) 관내 골프장 건설 관련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전대책
- (7) 사육곰에 대한 관리 철저
- (8) 외래어종에 대한 관리

< 전주지방환경청 >

- (1) 정읍천 수은 검출 관련 조치
- (2) 새만금 수질보전대책 이행 미흡
- (3) AI 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오염 대책
- (4)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관리

< 대구지방환경청 >

- (1) 송유관 도유사건 재발방지 대책 마련
- (2)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 (3) 낙동강 수량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 (4)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제도 사전준비 철저
- (5) 환경영향평가 전 사전 공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6)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대책 마련

처 리 요 구 현 황

- (7) 야생동식물조사원 처우개선
- (8) 경주천북지방산단 코크스공장 분진 대책 마련
- (9) 구미 선도지구 철새도래지 보호대책
- (10) 낙동강권역 호소 수질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 (1) 내수면 어업관련 환경분쟁 문제
- (2) 환경분쟁 처리율 제고
- (3) 위원회 조정결정 수용률 제고
- (4) 소음·진동 분쟁 문제
- (5) 공기업의 분쟁조정 불복 문제

< 국립환경과학원 >

- (1)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관리·감독 강화
- (2) 내분비계 장애물질 연구
- (3) 수입차 배출가스·소음 관리 강화
- (4)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 (5) 하천구역 경작지 현황조사 연구용역사업 관리감독 철저

< 국립생물자원관 >

- (1) 국내 생물자원 외국유출 방지대책 강구
- (2) 전시관 운영 관련
- (3) 4대강 구간별 생태계 변화 및 보전 관련

처 리 요 구 현 황

< 한국환경자원공사 >

- (1) 재활용육성자금 운용 제도 개선
- (2) 석면 슬레이트 대책
- (3) 어린이 놀이터 환경오염 방지 대책

< 환경관리공단 >

- (1) 사업장에 대한 하도급 관리 강화
- (2)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방지 관련
- (3) 생태하천복원 기술지원센터 활성화
- (4) 철도 소음측정망 확충

< 국립공원관리공단 >

- (1) 국립공원 산불 방지대책
- (2) 국립공원내의 무단벌목 방지대책
- (3) 국립공원 계곡수 하천수 수질관리 대책
- (4) 국립공원 구역 해제 문제
- (5)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처우개선
- (6) 해상국립공원 해양쓰레기 처리 대책
- (7) 국립공원내 소수력발전소 설치시 환경영향 저감대책 마련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 (1) 반입폐기물 관리 관련
- (2) 수도권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관련

처 리 요 구 현 황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1) 친환경상품 구매 확대
- (2) R&D 사업정산 문제
- (3) 녹색성장체험관 운영 활성화
- (4) 지하수 수질관리 강화

< 서울특별시 >

- (1) 홍익어린이집 관련 석면관리대책

(2) 노동부소관

시 정 요 구 현 황

< 노동부 본부 >

- (1) 산하기관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2) 대구북부청 및 포항청의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 감독 철저
- (3) 고용안정사업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 (4) 고용지원센터의 통계관리 철저
- (5) 일자리관련 사업의 성과부진 시정
- (6) 노사공동재취업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7) 고용지원센터 신규청사 매입관련 절차의 투명성 강화
- (8)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
- (9) 산재예방관련 인력과 예산 확보
- (10) 대형 건설사 안전관리 부적절
- (11) 안전검사 위탁에 따른 평가·감독 규정 부재
- (12) 우편원격훈련의 적정성
- (13)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방지
- (14)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과도한 행정규제 시정 필요
- (15) 대한항공 조종사 불법파견 관련 시정 필요
- (16) 청년인턴제 사업의 철저한 관리 필요
- (17) 대한안전협회에 대한 세무감사, 자체감사 및 감독 강화
- (18)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금 등 자금운용 관련 노동부감사
- (19) 산업인력공단 등 산하기관의 국제입찰 관련 노동부감사
- (20) 물품조달의 부적절성 시정

시 정 요 구 현 황

< 서울지방노동청 >

- (1) 근로감독관 전문성 부족
- (2) 근로감독 관련 각종 서류의 행정편의적 작성
- (3) 소속 공무원 기강 확립
- (4) 공무원단체협약 위반사항 대응 부적정
- (5)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엄중조치
- (6) 비정규직 대책관련 지방노동청 역할 미흡
- (7) 대형 건설현장 발생 중대재해 관리
- (8) 석면해체 관련 지도감독 강화
- (9) 흥익어린이집 문제 석면관리 대책 마련
- (10) 서울지역 직업훈련기관 불법운영 방지

< 경인지방노동청 >

- (1) 각종 정부지원금 불법수령 방지 대책 마련
- (2) 석면해체관련 지도점검 강화
- (3) 공무원 노조 관련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조치 강화
- (4) 간호조무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시정강화
- (5) 택시업계 근로자 보호 조치 강화
- (6) 외국인투자기업 노사관계 안정화
- (7) 임금체불 방지노력
- (8) 산재예방사업 강화
- (9) 직업훈련기관 관리 철저
- (10) (주)콜트콜텍 근로자 해고에 대한 적극적 시정

시 정 요 구 현 황

< 광주지방노동청 >

- (1) 산업재해 예방
- (2) 광주지역 시내버스 채용 비리
- (3) 사회적 일자리기업 선정 및 관리 대책
- (4) 노사분규 원만한 해결
- (5) 위법한 공무원노조의 단체협약에 대한 조치

< 대전지방노동청 >

- (1)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개선
- (2) 공무원노조의 위법한 단체협약 시정
- (3) 콜택 근로자 해고 관련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 (1) 노사정위의 대표성 강화
- (2) 의제별위원회 위원의 중복참여 지양 및 효율성 강화
- (3) 업종별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
- (4) 노사정위원회의 자율성 확보

< 근로복지공단 >

- (1) 산재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
- (2) 산재보험 부정수급조사 활성화
- (3) 보험료징수 및 산재급여 업무 철저
- (4) 요양비 대부사업의 집행부진
- (5) 보험료징수 통합에 따른 비용의 국가 부담

시 정 요 구 현 황

- (6) 공단 대부사업의 실적 부진
- (7) 보험업무 대행기관의 지원금 알선 등
- (8) 경기보조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등

< 한국고용정보원 >

- (1) 워크넷 기능강화
- (2) 워크넷 장애인 웹접근성 강화
- (3) 일모아시스템 강화를 통한 중복수혜자 방지대책 마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1) 국가정보원과의 업무협약 부적정
- (2) 산업안전보건연구 연구과제 수행 부적절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 (1) 보조공학기기 지원
- (2) 공단직원 경징계의 부적정

< 한국산재의료원 >

- (1) 퇴직의사 퇴직금 산정방식 부적정
- (2) 특진포상비 부당지급
- (3) 감사의 겸직

시 정 요 구 현 황

< 한국폴리텍대학 >

- (1) 학장임명의 공정성
- (2) 캠퍼스의 철저한 관리 필요

처 리 요 구 현 황

< 노동부 본부 >

- (1) 일모아시스템을 통한 중복수혜 점검 철저
- (2) 범 정부 차원의 청년 니트(NEET)족 방지대책
- (3)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의 내실화
- (4) 통합공무원노조의 노조법 위반 행위
- (5) 부산 예인선노조 진정사건 신속처리 지도
- (6) 정부 및 공공기관 청소원의 임금 실태조사
- (7) 채권추심원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 (8) 건설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요건 강화
- (9) 산재관련 고소·고발 시스템 개선
- (10) 새터민 근로자 산재율 감소 대책
- (11) 건설현장추락사고 예방 강화
- (12) 대학연구실 안전사고 방지대책
- (13) 시멘트 관련 근로자 산재예방 대책
- (14)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
- (15)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실효성
- (16)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 확보
- (17)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률 증대 방안
- (18) 직장보육시설 설치율 및 지원 확대 방안
- (19) 교육훈련의 활성화
- (20) 임금피크제의 적절한 활용
- (21) 취업취약계층 다수고용사업장 및 업종에 대한 점검 철저
- (22) 반도체 공장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대책

처 리 요 구 현 황

- (23)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ILO협약 비준 확대
- (24) 이러닝(e-learning) 활성화 대책 필요
- (25) 택시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 서울지방노동청 >

- (1) 산업안전감독관 전문성 확보
- (2) 간호조무사 근로조건 점검
- (3) 희망근로프로젝트 참여 근로자의 산재감소
- (4) 일부 지청 산하 사업장의 재해율 감소 대책 마련
- (5) 여름철 석면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
- (6) 부정수급 전담인력 확충
- (7) 직업훈련기관 점검 철저
- (8) 산재취약근로자 안전보건 문제
- (9) 직업성관련 질환

< 부산지방노동청 >

- (1) 마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부실
- (2) 과태료 징수율 제고
- (3)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점검 철저
- (4) 노사분규 관리 전담팀 운영 등 파업관리 철저
- (5) 병역특례자 근로감독 철저
- (6) 취약근로자 고용사업장 재해예방 점검 철저
- (7) 재해율 감소 대책 마련
- (8) 외국인근로지도 임금체불 대책 마련

처 리 요 구 현 황

- (9)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지도·점검
- (10) 최저임금 위반대책 마련
- (11) 부산지역 간병협회의 부당회비 징수
- (12) 부산지역 고용률 제고 방안 마련

< 대구지방노동청 >

- (1)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 (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부실 운영
- (3) 실업급여 부정수급
- (4) 사회적일자리사업 부정수급
- (5) 여성다수고용사업장 점검 철저
- (6)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 (7) 실업대책 마련

< 경인지방노동청 >

- (1) 안정적 일자리 나누기 대책 마련

< 광주지방노동청 >

- (1)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증대
- (2) 여성가장실업자의 취업률 제고
- (3) 산업재해 예방
- (4)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 방지 대책
- (5) 실업률 해소 방안 마련
- (6) 제주도 출장소 설치
- (7) 행정기관 시정 조치

처 리 요 구 현 황

(8) 지방고용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 대전지방노동청 >

- (1) 석면 관리
- (2)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 부정수급 방지 대책
- (3) 산업재해 예방
- (4)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적 개선
- (5) 취업률 증대 방안 마련
- (6) 지방고용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 (7)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 관리 철저

< 중앙노동위원회 >

- (1)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활용 저조
- (2) 차별시정 공익위원의 구성 다양화
- (3) 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의 다양화

< 근로복지공단 >

- (1) 반도체공장 근로자 산재승인 요건 완화
- (2) 산재장해자의 원직장복귀율 저조
-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활동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 (4) 산재의료원과의 통합
- (5)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차별 시정
- (6) 신종플루 관련 업무상질병판정 지침 개정
- (7) 해외파견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
- (8) 청년인턴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 적용 부적정

처 리 요 구 현 황

- (9) 유족 및 장애특별급여 활성화
- (10) 심사인력 충원
- (11) 청년인력 채용 확대

< 한국고용정보원 >

- (1) Job School 활성화

< 한국산업인력공단 >

- (1) 해외취업연수
- (2) 외국인근로자의 비공식 송출비용 조사
- (3) 직업방송의 시청률 저조
- (4) 자격검정시험의 관리 철저
- (5) 한국어능력시험의 관리 철저
- (6) 해외취업자 관리 철저
- (7) 우수 기능인력 지원
- (8) 국가자격검정시험
- (9) 마산외국인근로자센터의 부실운영
- (10) 외국인노동자 취업교육 강화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1) 조선업 관련 근로자의 석면피해 최소화
- (2)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안전교육
- (3) 안전검사, 안전인증의 민간위탁 문제
- (4) 서비스업종 산업재해예방 노력 필요
- (5) 클린사업장 재인정 부진

처 리 요 구 현 황

- (6) 개성공단 산재예방교육 미실시
- (7) 산재예방 홍보비의 적정 집행
- (8) 휴일 건설현장 재해예방 관리 철저
- (9) 재해예방 경보·예측 시스템 구축
- (10) 클린사업장지원 사업 강화
- (11) 작업환경실태조사 관리 강화
- (12) 반도체 공장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대책
- (13) 외국인근로자 안전교육
- (14) 임업 및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관련 재해예방 대책 필요
- (15) 건강진단결과 제한적 제공의 개선
- (16) 석면 안전성평가 수행 주체
- (17) 타이어 제조사업장 보건업무 강화
- (18) 특수형태근로자 산재예방 강화 대책
- (19) 대형건설공사에 대한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 제도
- (20) 신규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 (1) 직업능력개발센터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
- (2) 장애인고용율 제고방안
- (3)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방지
- (4) 장애인근로자의 처우 개선
- (5) 장애인고용정보시스템 활성화
- (6) 장애유형에 따른 지원고용 다각화
- (7) 직업훈련생의 훈련비 현실화

처 리 요 구 현 황

- (8) 채용박람회 참여업체 다양화
- (9)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대

< 한국산재의료원 >

- (1) 적정 인건비 집행
- (2) 비정규직 해고인력 대책 마련
- (3) 대구재활전문병원 공사 지연
- (4) 응급의료 전문의 확충
- (5)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의료원 접근성 강화
- (6) 산재의료기관 당연지정 관련 헌법소원 대처 필요

< 한국폴리텍대학 >

- (1)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이행
- (2) 기업전담제 확대실시 필요
- (3) 교내 안전사고 예방
- (4) 북한이탈주민 기초직업적응훈련 강화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 (1) 졸업생의 취업 관련
- (2) 노동행정연수원 원활한 운영 필요
- (3) 노동행정연수원 충북혁신도시로 이전
- (4) 신입생 입학의 형평성 고려
- (5) 기술개발연수사업의 전문계고 교사 참여 확대
- (6) 사전 안전사고 예방

(3) 기상청 소관

시 정 요 구 현 황

< 기상청 >

- (1) 인터넷 비난여론에 대한 과잉 대응
- (2) 기상관측사업 R&D 평가 기준 정비
- (3) 4대강 기상·기후 영향평가 철저 시행
- (4) 남·북 기상협력 강화

처 리 요 구 현 황

< 기상청 >

- (1) 기상부문 R&D 효율화
- (2) 지진관측 및 예보
- (3) 통신해양기상위성 발사 및 후속 사업
- (4) 우주기상 부문 강화
- (5) 대구기상대의 승격
- (6) 기상관측자료 통합
- (7) 동네예보 개선
- (8) 슈퍼컴퓨터 3호기
- (9) 안개 특보제 실시 관련
- (10) 기상조절 기술 개발

처 리 요 구 현 황

- (11) 기상 특보 정확도 향상
- (12) 기상산업진흥원 이사진에 기상사업자 포함
- (13) 기상관측 장비 국산화
- (14) 장마예보 중단 재검토
- (15) 슈퍼컴퓨터 센터 신축 관련
- (16) 황사 및 해상기상 예보 정확도 제고
- (17) 낙뢰 예보 서비스 확대
- (18) 예보전문인력 역량 강화
- (19) 민간기상사업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20)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 (21) 산악지역 기상정보서비스 확대
- (22) 국립기상연구소 조직 개편
- (23) 기상콜센터 운영 개선
- (24) 신재생에너지 지도 제작 관련

나. 대상기관별 시정·처리 요구사항

(1) 환경부 소관

▶ 환경부 본부 ◀

【시정요구사항】

(1)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분할납부로 인한 예산상 혼란 시정

- ▶ 생태계보전협력금은 분할납부방식으로 인해 회계상 미수납이 과다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시정

- ▶ 2007년 이후 사전환경성검토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173건에 이르고, 환경영향평가 없이 공사를 시행한 것 총 18건에 이르고 있는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3) 석면피해신고센터 운영 부실

- ▶ 석면관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석면피해 신고센터의 운영이 부실한바, 석면피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부 정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석면피해 신고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4) 영산강청 국정원 보고 문제

- ▶ 영산강청이 광양 동호안 지정폐기물 매립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국정원에 보고한 것은 국정원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정보원과의 업무협조 기준을 정립할 것.

(5) 야생동물구조센터 부실 운영

- ▷ 야생동물구조센터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시설 관리 미흡, 인력미 확보 등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6)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구선정의 그린벨트 해제 원칙 위반

- ▷ 보금자리 주택지구 2차 지구선정과정에서 제척기준인 그린벨트 환경평가 2등급 이상의 상당면적이 포함되어 2008년 국무회의에서 마련된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의 그린벨트 해제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바 그린벨트 해제원칙을 준수 할 것.

(7)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정화조치 명령 이행 미흡

- ▷ 주요 산업단지 1,245개 업체에 대한 토양지하수 환경실태 조사결과, 112개 업체가 오염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정화조치명령을 내렸으나 46개 업체만 정화조치를 완료하고 나머지 66개 업체(58.9%)는 정화조치를 미이행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8) 환경부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

- ▷ 비리혐의 공무원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바 환경부 공무원의 복무기강을 확립하도록 할 것.

(9) 하천부지 유기농 경작지 대책 재검토

- ▷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하천부지 내 유기농 경작지의 현황조사 통계에 오류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해 해명하고 재조사를 실시하며, 유기농 경작지 수용의 타당성에 대해 재검토 할 것.

(10) 남해화학 폐기물 침출수 유출

- ▷ 남해화학의 폐기물 침출수 유출과 관련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것.

【처리요구사항】

(1) 학교시설의 라돈 문제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

- ▷ 학교시설에서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의 12배가 넘는 수준으로 높게 검출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므로 라돈이 높게 검출되는 학교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학교의 라돈량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2) 순환골재의 환경성 확보 대책

- ▷ 순환골재중 폐시멘트의 유출수로 인해 피해가 있으므로 조속히 순환골재의 환경유해성 조사를 실시하고 사용금지 대상설정 등 대책을 마련할 것.

(3) 나노물질 안전성 확보

- ▷ 선진국에서 나노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나노물질이 생활속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와 안전관리대책이 미흡하므로, 나노물질의 안전성 연구에 대한 예산투입을 확대하고 관련부처간 협의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4) 어도에 대한 종합적 개선책 마련

- ▷ 20~30년 전에 환경적 고려없이 만들어진 어도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물고기의 회귀를 막고 있으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5)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RSD) 타당성 재검토

- ▷ 원격측정장비(RSD)가 휘발유와 가스차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경유차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떨어지고, 비가 5mm 이상 오거나 시속 120km 이상을 달리거나 안개가 끼었을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타당성에 대해 재검토할 것.

(6) 왕궁축산단지 환경대책 마련

- ▷ 새만금 지역 수질오염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상류지역에 위치한 왕궁축산단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7) 비점오염방지시설의 개선대책

- ▷ 비점오염방지시설 중 하나인 장치형은 침전물을 주기적으로 수거해 주어야 하나 관리비용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 전국 어린이 놀이터 환경 안전 강화

- ▷ 전국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진단 결과, 100개중 적합판정을 받은 곳이 단 4곳에 그치고 있는바, 법 개정 및 관련 예산확보 등을 통해 어린이 놀이터의 환경문제를 시급히 개선할 것.

(9) 군부대 오폐수 무단 방류 대책 마련

- ▷ 국방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군부대에서 처리없이 방류하는 하수량이 일일 36,830톤에 이르고 있으며, 한강 본류 및 지류로 흘러들

어가는 오폐수량이 15,000여톤에 이르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0) 각급 학교의 실내 환경 문제 개선

- ▷ 각급 학교에 대한 석면의 중간검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3,158개 학교 중 99.1%인 3,128개 학교에서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표면고착화 등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
- ▷ 각급 학교의 실내공기질 검사결과, 미세먼지 기준치 초과 학교가 전체의 11.3%에 달하는 등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11) 산업단지 토양·지하수 오염대책

- ▷ 산업단지에 대한 토양·지하수 오염 실태조사 결과, 대구와 울산, 창원 등에 위치한 업체의 위반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산업단지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마치고, 소기업에 대한 정화조치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12) 생태하천복원사업의 개선 필요

- ▷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그 대상지역 선정의 부실함으로 인하여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바 철저한 사업실사 등을 통해 적합한 지역에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13) 폐의약품 분리수거 개선방안

- ▷ 정부가 추진한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의 실적이 부실한바, 환

경부가 주도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

(14)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기준 마련

- ▷ 케이블카 설치시 최대한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자연자원 및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환경부가 미리 친환경적 기준을 제시할 것.

(15) 폐유 재활용 박리제의 유해물질 검출 대책

- ▷ 폐유를 재활용하여 만든 박리제에서 미국 환경청이 우선감시 오염물질로 지정한 PAHs 성분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는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6)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의 문제

- ▷ 보통 2~3년인 시동모터의 내구수명이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으로 인해 최소 6개월에서 평균 1년 정도로 단축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7) 국가수질자동측정망 운영 개선

- ▷ 국가수질자동측정망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측정소 및 채수시설의 이전·설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측정결과가 실시간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할 것.

(18) 조류독감(AI) 매몰지 지하수 및 토양 오염 관리 강화

- ▷ 조류독감과 구제역 등으로 인한 살처분 매몰지역의 토양 및 지하

수 오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19) 빗물이용시설 확대 설치 방안 강구

- ▶ 빗물이용시설의 확대 및 적극적인 설치를 위해 청소용수 및 조경용수 등 물 이용량이 많은 아파트 등 다세대 공동주택도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빗물이용시설 확대방안을 강구할 것.

(20) 지하수 브롬산염에 대한 종합적 대책

- ▶ 지난 6월 환경부의 먹는샘물에 대한 조사결과, 브롬산염이 국제기준을 최고 2배까지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들 브랜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바 이를 공개하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급식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21) 지정폐기물 매립장의 부족 및 편중 문제

- ▶ 지정폐기물 매립장의 특정지역 편중이나 부족으로 인해 석면 등 지정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2) 수질오염총량제 개선 필요

- ▶ 현행법상 수질오염총량제가 4개의 특별법에 따라 시행됨에 따라 일관된 오염총량관리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등 시행상 제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3) PCBs 함유폐기물 규제 합리화

- ▷ 산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변압기 본체 등 재활용 가능한 부재(部材)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할 것.

(24) 소각시설 다이옥신 기준치 초과

- ▷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측정결과 일부 지역에서 초과율이 30% 가까이 나오는 등 기준 초과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5) 폐자동차 재활용 비율 제고

- ▷ 환경부가 2009년 상반기에 실시한 자동차 폐차업자 특별점검 결과, 조사대상 120개 업체의 32%인 38개 업체가 자동차 자원순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폐자동차 재활용체계를 재검토하여 재활용률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6)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관리를 위한 RFID 시스템 도입

- ▷ 2003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도입되었지만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률이 낮은바 RFID(전자식별 무선인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기·전자제품의 효율적인 수거체계 확립을 통해 재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27) 폐기물 자원화 사업의 타당성

- ▷ 폐기물 자원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범사업을 통해 공법의 타당성과 친환경성, 경제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추진하도록 할 것.

(28) 고향유 사용 허용 관련 대책

- ▷ 울산시의 고향유 사용 허가 검토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환경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가 임의적으로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29) 여주공군사격장 환경오염 문제

- ▷ 여주보 인근의 공군사격장의 포탄잔재물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등 환경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0) 멧돼지 서식밀도 과다에 따른 문제

- ▷ 멧돼지의 서식밀도가 과다하여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고 인명피해의 우려도 있는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

(31) 생활폐기물 처리 장기수의계약

- ▷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처리의 장기수의계약에 따른 독점처리로 인해 서비스 불편, 차량 노후, 공무원과의 결탁 우려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32)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제반 지적사항

- ▷ 16개 보 설치와 대규모 준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자연습지·수생태계·모래톱 훼손 등 환경파괴 우려가 크므로 대규모 보 설치와 과도한 준설을 재검토할 것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한편,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
- ▷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등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과학적인 자료를 통해 환경적 측면을 충분히 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적 절차를 준수할 것.

- ▷ 16개의 보 설치에 따른 부영양화로 인한 수질오염 악화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
- ▷ 보 설치에 따른 수위 상승으로 홍수 피해 가능성이 있고, 상수원 댐 등과 관련해서도 안전성 우려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 시골 강변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실효성과 경제성을 재검토할 것.
-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지에 시의성이 떨어지는 과거의 자료를 사용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가 전반적으로 졸속·부실 추진 및 법 위반의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사후점검의 강화,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철저한 실시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할 것.
- ▷ 하도준설에 따른 오탉수 문제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고 실효성이 의심되며, 준설토 처리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
- ▷ 40개 지역에서 동시에 공사를 시작할 경우 사고발생시 먹는물 확보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준설로 인해 4대강 본류 취수원 92개소 중에서 25개 취수장의 이설 및 개보수가 필요하여 인근지역의 식수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문제제기에 대해 관련 자료의 투명

한 공개, 적극적인 홍보와 대처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도록 할 것.

- ▷ 환경부가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4대강 사업의 홍보를 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주관부서로서 부적절하므로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33)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관리강화

- ▷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국고보조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34) 수영장, 목욕장, 온천 등의 수질관리

- ▷ 수영장, 목욕장, 온천 등은 다중이용시설임에도 수질에 대한 기준이 각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온천법 등 세 개부처로 나뉘어져 수질검사 항목, 수질기준 등이 각각 다르므로 이를 전문부서인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35) 음식물쓰레기 음폐수 처리 대책

- ▷ 2013년 이후 런던 협약에 따라 음폐수의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음식물쓰레기 음폐수 처리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전국적으로 3개소 밖에 없는 등 대책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실효성있는 처리대책을 마련할 것.

(36)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내역 변경

- ▷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경우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한 계획서와 준공검사 때의 내역이 변경되거나 인수받은 후 시설가동과정에서 당초 계약대로 가동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7)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 부실

- ▷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운영이 부실하고 성과가 미흡하며 연구용역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8) 분수 수질관리 기준 마련

- ▷ 최근 전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분수가 증가하고 있고 주로 유아와 어린이들이 분수에 노출되고 있으나 분수에 대한 수질기준이 없으며, 지난 여름 한국환경시험연구소의 수질검사 결과 서울시내 네 곳의 분수 중 세 곳에서 대장균과 분원성대장균 등 세균이 검출되었는 바, 분수 수질기준을 마련하고 점검하도록 할 것.

(39)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의 배출수수료 면제 재검토 필요

- ▷ 대형 폐가전제품의 배출수수료 면제 추진은 재활용센터의 수거율 및 대형 폐기물의 재사용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것.

(40) 고물상의 소형 폐가전제품 취급 및 중국 등 수출 관리대책

- ▷ 자원순환사회연대의 서울과 전주지역 고물상 109곳에 대한 조사 결과 98곳에서 소형 폐가전제품을 취급하고, 이를 원형으로, 또는 해체하여 중국 등에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소형 폐가전제품의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41) 폐석면 광산 관리 철저

- ▷ 수도권 소재 폐석면 광산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주민 출입 통제

및 안내 표지판조차 없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주민들은 석면 폐석을 축대로 사용하여 택지조성을 하고 있는 실정인 바, 지자체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개황조사중인 폐석면 광산에 대한 정밀조사를 조속히 실시할 것.

(42) 흥익어린이집 관련 석면관리대책

- ▷ 석면 비산과 관련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석면노출가능지역에 대한 석면지도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석면함유 건축물 사전등록제 도입 및 산업안전·다중이용시설·폐기물처리 등 석면 관련 법률의 통합 등에 대해 검토할 것.
- ▷ 피해 어린이에 대하여 건강검진, 건강영향조사 등을 조속히 실시하고, 장기 이력추적, 건강수첩 발급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 뉴타운 조성지역에 상시 대기질 측정망을 설치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건축물 철거 외에 내부철거·리모델링에 대해서도 석면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43) 수돗물 가격 지역별 격차해소

- ▷ 기초자치단체별 수돗물 가격을 비교한 결과, 경북 청송군은 톤당 207원인데 반해 강원 정선군은 톤당 1,364원으로 자치단체간 격차가 큰 상황이므로 수돗물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하여 수돗물 가격의 지역차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4) 환경부 소관 자문위원회 회의실적 저조

- ▷ 위원회 정비 이후에도 환경부 소관 자문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

한 상황이므로 국가습지심의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할 것.

(45) 항공기소음기준 일원화

- ▷ 비행장 소음규제기준이 민간 비행장은 75웨클, 군용 비행장은 85웨클로 이원화 되어 있는바, 이를 75웨클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한강유역환경청 ◀

【시정요구사항】

(1) 화학테러 대비 훈련 실효성 제고

- ▷ 화학테러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전문가를 확보하고, 훈련 장비와 약품 등 소모품 보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실효성 있는 훈련이 되도록 노력할 것.

(2) 폐금속 광산 주변 지역 오염확산 방지 및 대책 마련

- ▷ 2008년 폐금속광산 환경오염영향조사 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광명시 가학광산)와 수질에서 중금속 검출(화성 삼보광산)이 확인된 바 있음. 농작물 오염과 생활용수로 쓰는 지하수의 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주민건강과 오염확산 방지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

(3) 팔당호 유기농 경작 금지 재검토

- ▷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하천부지 내 유기농 경작지의 통

계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유기농 경작지 수용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과거 정부에서 친환경 농업을 권고하였는데 현재 유기농 경작을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환경부가 실시한 관련 연구보고서의 통계수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유기농 경작과 수질영향의 인과관계가 아직 규명되지 않았는바 팔당호 유기농 경작 금지를 재검토할 것.

(4) 사전환경성검토 제도 철저 운영

- ▷ 최근 4년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내용 미이행 총 409건 중 경기도가 33.7%(138건)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은평 새길 건설사업 등 협의 없이 공사하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

(5)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역특성화 운영

- ▷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기술개발업무 보다는 관리업무에 치중하고, 지역맞춤형 기술 개발 보다는 전국적·통상적 연구에 치중하는 것은 문제이므로 이를 시정할 것.

(6) 수변구역 토지매수 제도개선

- ▷ 용도별 토지매수 현황을 보면, 점·비점오염원이 모두 없는 방치된 임야에 대하여 대규모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협의매수로 산발적으로 매수되어 수질개선 효과가 적어 보이므로 수변구역 토지매수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것.

(7) 시·군별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방안 강구

- ▷ 기금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재원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으로 설치해야 함. 기금예산을 당초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처리요구사항】

(1) 팔당 인근 유기농으로 인한 하천 오염 관리

- ▷ 팔당 하천구역 내 유기농으로 인한 하천 오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4대강으로 인한 하천구역 내 유기농가 보상에 있어 주민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

(2) 시화호 저질토 처리 대책

- ▷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저질토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그러나 관련 예산도 부족하게 잡혀 있으므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 할 것.

(3) 환경영향평가 인력 총원

- ▷ 영향평가 업무는 급증하는데 비해 인력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어 평가서 부실 검토 우려가 있으므로 인력증원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4) 지하수 오염대책 마련

- ▷ 최근 지하수의 경우 수질기준 초과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생활용수에서도 세균 등이 검출되는 등 지하수 관리가 미흡하므로 지자체 단위에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5)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 ▷ 수상레포츠,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 4대강 살리기 관련 홍보업무는 타부처의 업무이므로 환경부에서 홍보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것.
- ▷ 4대강 사업구간 및 인접 지류구간 내 위치한 취수시설 총 213개 중 25개가 준설 등으로 취수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 ▷ 남한강수계는 수자원이 부족하므로 ‘보’를 설치하는 것은 수자원 확보는 물론 수상레포츠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므로 4대강 사업을 착실히 추진할 것.
- ▷ 과거 한강하천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 당시, 준설과 인공시설물 설치로 인한 수질오염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환경부의 협의의견이 바뀐 이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해 재검토 할 것.
- ▷ 이포보와 여주보 건설로 인한 부영양화와 조류증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의견을 검토하여, 추후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보 건설로 인한 수질악화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포함시킬 것.

(6) 굴업도 골프장 건설에 따른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필요

- ▷ 굴업도는 아름다운 숲, 올해의 자연문화유산 등으로 선정될 정도로 환경적 가치가 높은 곳이므로 이곳에 골프장 등 위락시설을 건설하는 것에 대하여 제대로 환경영향평가를 할 것.

(7) 휴 · 폐광산 지하수 관리대책 마련

- ▷ 환경부, 지경부, 광해방지공단, 해당 지자체간 TF팀을 구성하여 광산 주변 수질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지하수 수질대책을 마련할 것.

(8) 불법 포획기구에 대한 단속 강화

- ▷ 불법 포획기구가 일반 주민에게 피해를 끼치므로 인명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매년 밀렵건수가 늘고 있으므로 밀렵단속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9) 수질자동측정망 운영의 적정성 및 효율성 제고

- ▷ 일부 수질자동측정망의 경우 노후화되어 있어 정확도가 떨어짐. 이러한 곳을 재정비하고, 측정망 운영과 관련된 데이터를 전산 입력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

(10)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 성공을 위해 오염배출량 준수 필요

- ▷ 현재 각 지자체별로 배출부하량을 초과하거나 기준에 임박한 결과가 나오고 있음. 수질오염총량제 성공을 위해서는 단위유역별 배출부하량 준수가 필수이므로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할 것.

(11) 환경감시단 확충 및 전문성 제고 필요

- ▷ 한강청 관내 오염물질배출업소는 23만 7천여 곳인데, 감시인원은 고

작 33명임. 이 중 절반이상이 서울시에서 파견 나온 직원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므로 환경감시단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것.

▶ 낙동강유역환경청 ◀

【시정요구사항】

(1) 석면피해신고센터 제 역할 촉구

▷ 2009년 9월 낙동강청에 석면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였으나 현재 까지 신고 접수 건수가 없는바 석면피해신고센터가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관리 강화

▷ 2008년도 사업비 정산을 2009년 6월말까지 하여야 하나 현재 (10월)까지도 안 되고 있는 등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과 회계가 부실하므로 이를 시정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3) 환경영향평가 전 사전 공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최근 3년간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업을 추진한 건이 191건이나 되고, 수정일반산업단지의 경우에도 법을 위반하여 사전공사를 실시하였는바 제도를 개선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

【처리요구사항】

(1) 부산지역 주민 혈중 수은농도 과다 대책 마련

- ▷ 부산지역 주민 혈중 수은농도가 국내평균의 3배를 넘고 있는바 원인은 수산물 섭취로 추정되므로 실태조사 및 수은을 포함한 수산물의 섭취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2) 사전환경성검토 인력 보강

-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담당인력은 오히려 감소하여 졸속검토가 우려되므로 대책을 세울 것.

(3)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 ▷ 농경지와 적치장에 준설토 적치시 오염토와 침출수가 하천으로 재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오염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 4대강 사업중 33개 공구에 대한 사업시행자가 수자원공사로 변경되었음에도, 환경영향평가 주체가 지방국토관리청으로 되어 있어, 사업자 변경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히 검토할 것.
- ▷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상예측, 준설토 적치로 인한 악취문제를 포함시킬 것.
- ▷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습지 영향 및 생태, 수질 악화 우려에 대하여 보완점은 없는지 점검할 것.
- ▷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수계 중 10개 취수장이 영향을 받게 되

어, 구미, 마산지역의 경우 준설로 인한 탁수발생으로 먹는 물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초래될 수 있는바 대책을 강구할 것.

- ▷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낙동강에서 취수한 물을 공급받고 있는 마산시민들도 보로 인한 수질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므로 시정할 것.

(4) 낙동강 둔치 · 경작 대책 마련

- ▷ 낙동강 둔치의 농지에서 유기질 비료를 쓰는 친환경영농이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5) 울산시 대기질 개선 대책

- ▷ 울산은 다른 대도시에 비하여 대기질 오염도가 높고, 폐암발병률도 전국 최고이므로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것.

(6) 염막, 삼락 고수부지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

- ▷ 645억원이 투입된 염막, 삼락 고수부지 정비사업 완료된 지 3년도 되지 아니하여 재공사를 하는 것은 예산낭비이므로 재검토 하고, 염막, 삼락습지는 멸종위기 2급 맹꽁이 집단서식처, 철새도래지이므로 보호대책을 강구할 것.

(7) AI 살처분 매몰지 사후관리 철저

- ▶ 관내 거창군 등에서 AI발생 조류를 매몰한 사례가 있는데 이곳의 수도보급률이 전국 최저(7.7%)이므로 식수원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오염측정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8) 수변구역 토지매수 사후관리대책 보완

- ▶ 토지매수 자체 보다도 매수토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바 현지주민을 토지관리인으로 채용하는 것은 혈연·지연 등으로 인해 업무 해태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고가 필요하고, 수변녹지 미 조성 토지에 대한 제초작업시 수질오염물질 제거 효과가 있는 자연식생 지 등 제초금지 대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

(9) 수계기금 신뢰성 제고

- ▶ 물이용 부담금 부과율은 매년 상승되는데 물이용 부담금 징수 목적인 주민지원사업,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수계기금 관리에 대한 불신과 지적이 많으므로 개선을 통해 수계기금 관리의 신뢰도를 높일 것.

(10) 진양호 조류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 ▶ 진양호는 서부경남 지역 주민의 중요한 식수원임에도 불구하고 조류발생이 빈번하며, 가축분뇨의 불법 야적등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므로 토지매수나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오염물을 제거할 것.

(11) PCBs 폐변압기 처리 총체적 점검

- ▶ 2009년 8월 이후 PCBs 2ppm 이상 함유 폐변압기 처리 현황을

보면, 한 업체가 최대 1,200톤/월을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됨. 이는 과도한 처리량으로 보이므로 각 업체별 시설용량 허가사항, 처리량, 보관량 등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

(12) 고성군 생활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유출 재발방지 대책

- ▷ 올해 7월 고성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어 하천을 통해 인근 바다로 유입되는 오염사고가 발생한 바, 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금강유역환경청 ◀

【시정요구사항】

(1) 클린주유소 사업 시행 미흡

- ▷ 클린주유소 사업에 있어 수도권과 비교해 지방청의 실적이 떨어지고, 환경부 보고 자료와 금강청 파악 사업장수가 다름. 클린주유소 사업 시행 의지 부족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폐기물처리업체 위반율 과다 시정

- ▷ 폐기물 처리 관련시설 비정상 가동, 미설치 등 폐기물처리업체 법 위반 사실이 많은데 허가시 검토를 철저히 하고 전자인계서 허위 작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것.

(3) 폐석면 처리업체 (주)이솔루션 관련 민원 및 입지문제 해결

- ▷ 폐석면 처리업체인 이솔루션은 학교, 어린이집, 농가와 인접하여 민원이 있고, 세차시설 등 허가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는바 철저히 점검하여 허가취소사유에 해당될 경우 허가를 취소할 것.

(4) 공주 백제 큰다리보 제거 시정

- ▷ 공주 백제 큰다리보가 완공(23억 투입)된지 10개월만에 2억 6천만 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하였는바, 4대강 사업으로 이 보를 제거하고 또 다른 보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낭비, 중복투자이므로 시정할 것.

【처리요구사항】

(1) 대청호 조류발생 대책 마련

- ▷ 대청호에 대하여 빈번하게 조류경보가 발령되고 있을 정도로 조류 발생 문제가 심각하므로 오염물질 유입 사전 차단, 하수도 보급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2) 폐금속광산 주변지역 토양·지하수 오염 방지대책 마련

- ▷ 폐금속광산에 대한 개황조사, 정밀조사 결과, 천안시, 청양군 등 토양 및 수질오염 정도가 심각(먹는물 수질기준 초과, 농작물 오염 가능성, 토양대책기준 초과)하고, 이는 방치할 경우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환경부 차원에서 향후 오염 확산 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 4대강 살리기사업 관련

- ▷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생태적으로 중요한 습지는 최대한 보전토록 하고 필요시 대체습지를 조성할 것.
- ▷ 실제 홍수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4대강 본류보다는 지방하천, 소하천이므로 홍수피해 결과에 따라 지방하천, 소하천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을 우선 추진할 것.
- ▷ 연기군 합강리 버드나무 군락지는 4대강 선도지구에 속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이 지역은 철새도래지로 보호가치가 크므로 보전 대책을 마련할 것.

(4) (구)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에 대한 대책 마련

- ▷ (구)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지역에 대한 정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대해 주민 반발이 있으므로 정밀재조사를 실시하며, 오염원인자가 최종 규명되기 전이라도 정부와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진료비·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이주주민에 대하여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5) 금강권역 호소 수질 개선대책

- ▷ 금강 호소 중 5곳이 좋은 물 기준(COD 4.0ppm)을 초과하고, 영산강 권역 호소는 2007년에서 2008년에 좋은 물 달성 호소가 11개에서 8개로 줄어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었음. 특히 삽교호는 농업용수 기준도 초과한바 호소 수질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6)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인력 보강

- ▷ 금강청 사전환경성검토 처리건수는 '08년 기준 878건으로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인력이 매우 적어 부실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인력을 보강할 것.

(7) 화학테러 대응능력 제고

- ▷ 화학테러 예방과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경찰이나 소방, 군부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 할 것.

(8) 충남지역 하수도보급률 확대

- ▷ 충남의 하수도보급률은 2007년 기준 59%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은 실정이므로 관내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고 하수도보급률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영산강유역환경청 ◀

【시정요구사항】

(1) 동호안 매립지 관련 관리감독 철저

- ▷ 동호안 매립지 붕괴 사고는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지도·감독, 안전진단을 통해 예방했어야 함.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제방 진단을 다시 받는 등 복구대책 마련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현지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마련할 것.

- ▷ 동호안 매립지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국정원에 보고하였는데 국정원은 행정업무와는 관련없는 기관이며 보고해야 할 이유가 없음. 이는 국정원의 행정사항에 대한 간섭이라 볼 수 있으므로 시정 할 것.

(2)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개선

- ▷ 2006년부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타제도에 비해 처분이 다소 과도하고 변경신고기간이 짧아 미신고 업체에 대한 제재가(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의 실효성은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3) 신재생에너지시설 입지 검토 철저

- ▷ 태양광·풍력발전소 건설에 있어 거리제한 규정 등이 없어 환경훼손·인근 가축 피해·재산가치 하락 등 주민간 마찰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사전환경성 검토를 철저히 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할 것.

【처리요구사항】

(1)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 ▷ 마스터플랜 수립시에는 각 환경청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마스터플랜 확정 후 환경부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조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시정 할 것.
- ▷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본류에 대한 투자보다는 광주천 등 지천에 대한 수질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하수도에 대한 투

자가 선행되어야 수질개선 가능하므로 영산강·섬진강의 특색을 고려하여 비점오염에 대한 투자를 확대 할 것.

- ▷ 석관정 등 자연문화유산이 대규모 준설토 적치장으로 선정되어 있는바, 준설토 적치장이 주변 경관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재검토 할 것.

(2) 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부정수급 방지 제도개선

- ▷ 관내에서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957명이 9억 7,100만원을 불법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원대상자가 급증하고 있는바 지급요건 확인 절차 강화, 회계관리 철저, 상속·증여 횡수 제한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것.

(3) 영산강 수질악화에 대한 대책 마련

- ▷ 광주광역시 구간을 지나면서 영산강 수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주암호의 수질도 악화되어 조류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영산강 수질에 대한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4) 생태·경관 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관리 철저

- ▷ 최근 섬진강 수달서식지인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불법 어로·낙시행위 빈발로 수달 개체수 보호에 큰 어려움이 있고, 담양하천 습지의 경우에도 불법 쓰레기 매립, 소각 등으로 습지가 오염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대책을 세울 것.

(5) 특정도서 모니터링, 방목가축 포획 등에 있어 안전대책

- ▷ 지난 9월 해양생물자원 조사 중이던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이 사

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특정도서 모니터링 및 방목가축 포획 등에 있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방목가축 포획에 있어서는 사유지 매수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 수도권대기환경청 ◀

【시정요구사항】

(1)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과장

▷ 저공해자동차 보급과 관련하여 수도권대기청에서 의무구매비율 계산방식을 달리 적용하여 보급실적을 부풀려 보도하였는바 이를 시정할 것.

(2) 녹색신용카드 발급실적 부진

▷ 녹색신용카드와 비슷한 시기에 발행된 외환은행 E-pass카드는 5만 구좌 이상 개설하였는데 녹색신용카드는 발급실적이 매우 저조하므로 기업은행과 협의하여 녹색신용카드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3) 시화호 인근 아파트단지의 악취 저감

▷ 시화호 근처 아파트단지에 물 썩는 냄새로 인해 악취 민원이 상당한바 악취 저감대책을 마련할 것.

(4) 수도권 미세먼지 대책

- ▷ 수도권 대기개선의 중요성과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4대강으로 인해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예산이 대폭 감소한 것은 문제이므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수도권 미세먼지 대책을 이행할 것.

(5) 대기오염 시·도별 배출허용 총량 과다 할당

-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기질이 악화되고 있음. NO_x 배출량은 할당량의 29%, SO_x 배출량은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바 배출허용 총량을 너무 많이 할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시정할 것.

【처리요구사항】

(1)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사업 활성화

-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사업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으나 부착·개조 소요시간 오래걸림, 홍보부족, 사후관리요령 설명 부족 등을 보완하여 동사업을 활성화시킬 것.

(2)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재제조 기술 개발

- ▷ 현재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교체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사용 후 성능이 떨어진 저감장치를 재제조하여 신제품 대비 90%이상의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30%이하 정도의 싸 가격으로 재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2차 장착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할 것.

(3) 이산화질소 삭감 대책 마련

- ▷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의하면, 이산화질소 삭감실적이 미흡하고, OECD('08) 환경평가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가 이산화질소 배출량 증가율 3위에 올라있으므로 이산화질소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4)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관련 제도보완

- ▷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 부착 의무화가 5년이 되어 가므로 비용편익 분석 등 성과평가를 통해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에 의해 경고 등이 들어왔음에도 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행법상 제재조치가 미비되어 있으므로 법률을 정비할 것.

▶ 원주지방환경청 ◀

【시정요구사항】

(1) 4대강 홍보 교육 시정

- ▷ 환경영향평가기관인 지방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4대강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시정할 것.

(2) 사전환경성검토 부동의 급감 시정

- ▷ 사전환경성검토 부동의 건수가 2008년에 2007년에 비해 급감하였는 바, 조건도 걸지 않고 동의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시

정할 것.

(3)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대기질 관리대책

- ▷ 2008년 5월부터 12월까지 시멘트 공장 주변 대기질 측정조사가 있었는데, 공장마다 검사기간이 다른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하고, 조사를 마쳤으면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

【처리요구사항】

(1) 원주천 수질개선 대책 추진

- ▷ 원주천의 BOD, COD가 5급수 수준이므로 추가 예산을 받아서라도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을 추진 할 것.

(2) 도암댐 유역 비점오염저감 철저

- ▷ 도암댐 상류 고랭지밭에서 유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도암댐 가동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심각한 바, 흙탕물 저감사업에 노력하고 과실수 재배 유도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3) 불법 야생동물밀렵으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대책 마련

- ▷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불법기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고, 밀렵 적발건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불법 포획기구 수거 예산이 감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바 관련 예산을 확충할 것.

(4) 폐금속광산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 2008년 강원충북지역 15개 폐금속광산 환경오염조사에서 10곳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9곳이 토양오염 대책기준 초과로 나타난바 해당지역을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 가능한지 검토하고, 폐금속광산 주변지역으로 환경오염이 재확산되어 주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5) 국내 및 수입 석탄재에 대한 관리강화

- ▷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국내 및 수입 석탄재에 함유된 중금속 유해성 논란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바 지방청별로 주기적으로 석탄재에 대한 중금속 함량 및 용출조사를 통해 관리를 강화할 것.

(6) 관내 골프장 건설 관련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전대책

- ▷ 관내에 골프장 건설이 급증하면서 지하수 문제, 자연환경 훼손문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서식지 훼손 등이 크게 우려되므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전대책에 힘쓰고 환경영향평가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7) 사육곰에 대한 관리 철저

- ▷ 곰은 야생성을 가지고 있는 맹수이므로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점검 및 지도를 나가서 사육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8) 외래어종에 대한 관리

- ▷ 블루길, 배스 등 외래어종, 생태교란종에 대한 관리를 위해 개체

수 파악, 생태계분석 등 체계적인 실태조사 방안을 마련할 것.

▶ 전주지방환경청 ◀

【시정요구사항】

(1) 새만금 관광지 지정폐기물 매립장 허가 부적절

- ▶ 기존에 운영중인 일반폐기물 처리장 외에 신규로 지정폐기물 매립을 허가하여 비응향은 2개의 대형 폐기물 처리장으로 둘러싸여 폐유, 폐산으로 인해 미관이 훼손되고 주변 생태계 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허가를 재고할 것.

(2) 군장국가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확장 재검토

- ▶ 군장국가산단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93년 산업단지조성계획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고, 2004년 업종별 토지이용계획 변경계획을 반영하여 변경협의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는 바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사업을 확장한다면 당초 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재검토 할 것.

(3)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장설립지원 업무협약 체결 부적절

- ▶ 사업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사전입지상담제도를 더 간소화하여 처리기간을 4일 이내로 단축하고 사전환경성검토시 주요검토사항을 사업자에게 안내 하는 식으로 스코핑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시정할 것.

【처리요구사항】

(1) 정읍천 수은 검출 관련 조치

- ▶ 2008년도 상·하반기, 2009년도 상반기 지하수 수질측정망 검사 결과, 정읍시 하북동 공단지역의 경우에는 3회 연속 수은이 검출되었는바 환경부는 지자체에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지하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것.

(2) 새만금 수질보전대책 이행 미흡

- ▶ 4대강 사업에 대한 예산 집중으로 새만금 수질보전대책(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률 제고, 하수관거 정비 및 확충, 소규모 하수도시설 법정시설로 전환 등)이 소홀해 질 우려가 있으므로 새만금 사업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3) AI 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오염 대책

- ▶ 2008년 AI로 인한 피해가 전북지역에 가장 많고, 8개 시·군 203개 지점에서 가금류를 매몰하였는데 AI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4개 시·군이 제외되었으므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을 위하여 수질검사를 조속히 시행하고, 상수도 공급 등 조치를 마련할 것.

(4)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관리

- ▶ 2007년 이후 전북도청이 허가한 태양광발전소는 677건인데 환경성검토를 협의한 것은 83건에 불과함. 이는 관련법에 의해 제외된 것이지만 소규모라도 발전소가 무분별 하게 건립될 경우 환경파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제도를 개선할 것.

▶ 대구지방환경청 ◀

【시정요구사항】

(1) 포항 형산강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 퇴적물 대책

- ▶ 포항 형산강 생태하천복원사업 설계용역시 하류만 조사하고 상류 오염원에 대한 현황이 누락되었는바 형산강에는 저질토가 많이 쌓여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2) 영주댐 건설사업추진 재고

- ▶ 영주댐 건설로 회룡포 모래톱 훼손 위기에 처해있고, 기상예측 부실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이 부실한바 사업추진을 재고 할 것.

(3) 1, 4 다이옥산 사고

- ▶ 1, 4 다이옥산 기준 초과 후 자율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최대유량일 때로 산정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폐수처리시설에서 정화 후 방류되도록 개선하고 다이옥산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법적 배출허용기준 마련, 취수원 이전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4) 산업단지 토양·지하수 오염지역의 조속한 정화

- ▶ 산업단지 토양·지하수 오염조사 결과, 대구 성서공단의 경우 21.4%가 위반, 울산 온산공단의 경우 26.8% 위반, 정화작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조속한 정화대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것.

(5) 지방상수도 민간위탁 추진 시정

▷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을 위해 포항, 목포 등 2곳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음. 이는 지방상수도 민간위탁을 위한 전단계로서 환경부가 상수도사업 민간위탁을 조용히 진행 중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시정 할 것.

(6) 왕피천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탐방로 조성 재고

▷ 왕피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왕피천 관리기본계획(2007)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업으로서 생태보전지역에 생태탐방로를 만들어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것은 생태계 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재검토 할 것.

(7) 경천대 인근 자전거 도로 타당성 평가 재검토

▷ 경천대 인근 산을 길게 절개하여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는데 타당성 평가는 하였으나 낙동강의 일부지역만 실시하고 다른 곳은 실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재검토 할 것.

【처리요구사항】

(1) 송유관 도유사건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전국에서 대구·경북 지역에서 송유관 도유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므로 토양오염 대책수립에 환경청이 참여하고, 도유사건

으로 인한 오염 현황에 대하여 관련부처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정화작업 완료에 대하여 확인할 것.

(2)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 ▷ 낙동강살리기 환경영향평가지 기상영향 예측이 없고 악취항목이 평가항목에서 제외되었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실있는 평가를 하겠다고 내놓은 대안인 스코핑 위원 인적구성이 협소하여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므로 스코핑 위원회 제도를 폐지할 것.
- ▷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낙동강에 32개의 습지가 없어지고, 8개의 습지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절차 기준을 지켜 점검하고 관리할 것.
- ▷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수계 중 10개 취수장이 영향을 받는바 준설로 인한 탁수발생으로 먹는 물 공급에 차질이 초래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 ▷ 낙동강 살리기 사업 평가 대상지역 밖에 있지만 낙동강에만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1급인 얼룩새코미꾸리에 대한 영향평가 및 전문가 의견 자문이 필요하므로 보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3) 낙동강 수량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 ▷ 일사다이옥산 검출 사고 등을 보면 수량이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므로 낙동강 물문제의 근본원인은 수량부족 문제인바 풍부한 수량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4)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제도 사전준비 철저

- ▶ 2010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나 해당 업소에 대한 맞춤형 순회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바 홍보, 교육 내실화, 참석율 제고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5) 환경영향평가 전 사전 공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 영양풍력단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도 않고 공사를 실시하였으나 대구청에서는 위 사실도 파악하지 못하였는 바 사전공사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미 설치된 풍력발전기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것.

(6)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대책 마련

- ▶ 음용 지하수 중 경북지역 10곳, 부산 5곳에서 노로바이러스균이 검출되었는바 건강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고, 음용 지하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7) 야생동식물조사원 처우개선

- ▶ 대구지방환경청의 야생동물조사원은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되어 월급이 낮고 근속연수가 짧아 전문성 확보가 어려우며, 업무내용에 있어 위험요인이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 할 것.

(8) 경주천북지방산단 코크스공장 분진 대책 마련

- ▶ 경주천북지방산단 인근에 위치한 코크스 공장(씨엔텍코리아)에서 아무런 저감시설 없이 공장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이 건강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비산 분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9) 구미 선도지구 철새도래지 보호대책

- ▷ 4대강 선도사업지구인 구미1지구에 350억원을 들여 생태하천을 조성중인데 이 곳에 구미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중 60%가 포함되어 있음. 또한 이 곳은 철새도래지이므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

(10) 낙동강권역 호소 수질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

- ▷ 낙동강 권역의 경우 좋은 물 기준(COD 4ppm) 목표를 달성한 호소가 2007년 10곳에서 2008년 8곳으로 줄어들었음. 영천호는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호소이고, 보문호는 경주 관광단지 내에 있는 호소이므로 수질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처리요구사항】

(1) 내수면 어업관련 환경분쟁 문제

- ▷ 4대강사업 시행시 내수면 어업피해로 인한 환경분쟁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2) 환경분쟁 처리율 제고

- ▷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환경분쟁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환경분쟁 처리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3) 위원회 조정결정 수용률 제고

-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에 대한 수용률이 85%수준에 머물고 있는바, 위원회의 조정 수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 소음·진동 분쟁 문제

-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건 중 85.5%가 소음·진동 관련 분쟁인바,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소음·진동 분쟁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측정 방안을 마련할 것.

(5) 공기업의 분쟁조정 불복 문제

- ▷ 공기업의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한 불복률이 높은 편인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국립환경과학원 ◀

【시정요구사항】

(1) 연구용역사업의 투명성 확보

- ▷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사업이 수의계약 등으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 특히,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이 2007년부터 136건에 이르고 있는바, 이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2) 자료제출 비협조 시정 필요

- ▷ 수질예측 기초자료에 대한 6개월간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감 당일 대량의 자료를 제출하여 정상적인 자료 검토가 불가능한 바,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

【처리요구사항】

(1)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관리·감독 강화

- ▷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은 2010년부터 3단계 사업이 시작되나, 2단계까지 집행내역을 보면 총 사업비 396억원 중 16%인 63억 6,700만원이 집행되었고, 연구자료 축적·수집 등 관리가 미흡한바, 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2) 내분비계 장애물질 연구

- ▷ 비스페놀A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서 그 위해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바, 인체에 대한 위해성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것.

(3) 수입차 배출가스·소음 관리 강화

- ▷ 중고 수입차 배출가스 부적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중고외제차 개별 수입에 대해서 수입단계에서 배출가스 등을 시험받게 하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

(4)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 ▷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2006년도 오염원자료를 토대로 한 수질예측모델은 신뢰성에 논란이 있으므로 재검토할 것.
- ▷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저감 대책으로 제시된 대체서식지 조성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여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폭 넓은 조사연구를 수행할 것.

(5) 하천구역 경작지 현황조사 철저

- ▷ 한강수계 하천구역 내 경작지 현황 조사보고서는 내용상 오류가 지적되었는 바, 연구용역사업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국립생물자원관 ◀

【시정요구사항】

(1) 멸종 위기종 야생동물 보호 대책 마련

- ▷ 환경부에서 추진한 멸종 위기종 지정 개체조차 로드킬을 당하고, 사고지점에는 야생동물 주의 표지판도 설치되지 아니한바, 로드킬을 포함하여 멸종 위기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

(2) 생물자원 국외반출 대책

- ▷ 2007년 이후 27종의 생물자원에 대하여 국외반출 승인을 해제하였는바, 국외반출 현황 전수조사와 함께 향후 생물자원 국외반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고유 생물자원 해외반출·소장 조사 분석 사업은 2017년까지 추진될 장기적인 사업인바, 고유생물자원 반출표본의 조속한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

【처리요구사항】

(1) 국내 생물자원 외국유출 방지대책 강구

- ▷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고유종 유출을 막는 등 생물주권확보를 위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바, 우리나라 고유 생물종 해외반출 현황을 파악하고, 고유종 환수노력 등 생물주권 확보 대책을 강구할 것.
- ▷ 우리나라 고유 생물종 중 해외유출 생물종은 우리나라가 소유 중인 외래종과의 교환 등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2) 전시관 운영 관련

- ▷ 국립생물자원관의 전시교육, 전시디자인, 교육프로그램개발 등 핵심기능이 계약직과 비정규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3) 4대강 구간별 생태계 변화 및 보전 관련

- ▷ 생물상 파악 및 서식지 보존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바 사업 추진에 따른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시정요구사항】

(1) 환경교육의 내실화

- ▷ 2009년 9월 1회 필기시험이 시행되었으나 그동안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제도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하여 왔는바, 동 제도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할 것.
- ▷ 환경 인력양성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담당 강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나, 강사 중 공무원의 비율이 과다하고, 강사선정기준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환경자원공사 ◀

【시정요구사항】

(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련

- ▷ 대형 유통마트 3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품목의 출고량을 조작하여 축소신고하였는바,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EPR 대상품목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며,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폐기물부담금 수입액이 예산액 대비 크게 감소하였고, 특히, 플라

스톡 수입업체에 대한 부과액이 대폭감소 하였는바, 불성실 신고 업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미회수 채권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채납채권관리를 강화할 것.

【처리요구사항】

(1) 재활용육성자금 운용 제도 개선

- ▷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승인 후 담보 부족 등으로 포기율이 높고, 융자신청 당시 담보능력이 충분하던 기업도 신청순위가 후순위일 경우 자금을 적기에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바, 재활용산업육성자금 담보조건을 완화하는 등 영세업체의 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 석면 슬레이트 대책

- ▷ 녹색주택 개량사업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석면함유 슬레이트 지붕 해체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폐기물처리비용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3) 어린이 놀이터 환경오염 방지 대책

- ▷ 어린이 놀이터의 환경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간이측정기기의 신뢰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바, 간이측정기기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중금속 함유량이 높은 곳은 정밀분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어린이 놀이터 환경안전 진단결과, 어린이 놀이터의 환경안전진단

결과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놀이터가 한 곳도 없는 것을 나타냈는
바, 어린이 놀이터의 유해환경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환경관리공단 ◀

【시정요구사항】

(1) 지역편중인사 시정

- ▶ 특정지역, 특정학교 중심으로 인사가 이루어져 평가시 인사부문에
서 지역편중의 문제가 제기되는 바, 인사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요구사항】

(1) 사업장에 대한 하도급 관리 강화

- ▶ 환경관리공단이 발주하는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점검결과 15건의
위반사례가 적발 되었는바, 동 공단이 추진하는 사업규모는 2009
년의 경우 143개 사업에 8,848억원으로 그 규모가 크므로 중소
기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전체 사업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에 대
한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2)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방지 관련

- ▶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수질오염통합방제센터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예산, 인력 등 사전준비가 미흡한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4대강 사업은 대규모 준설로 인한 탁수발생 가능성이 크고, 현재의 수질 오염사고 예방·방재 매뉴얼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업 시행시기를 조정하고, 대규모 준설에 대한 대책을 재검토할 것.

(3) 생태하천복원 기술지원센터 활성화

- ▶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전문성을 가진 공단에서 기술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도록 하고, 생태하천복원 기술 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과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할 것.

(4) 철도 소음측정망 확충

- ▶ 경의선은 최근 전철이 개통됨에 따라 열차운행의 늘어나 소음발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 지역에 대한 철도 소음측정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국립공원관리공단 ◀

【시정요구사항】

(1)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전사고 방지

- ▶ 국립공원관리공단 연구원 사망 당시 해양조사 안전 매뉴얼이 부재

하였는바, 체계적인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산재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비정규직의 산재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바, 산재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산재사고의 급증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 국립공원 탐방객 사망자가 3년간 증가하고 사망유형도 변화하고 있는바, 이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국립공원 탐방객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특히, 설악산과 북한산에서 안전사고의 50%가 발생하였는바, 사고다발지역 특별관리 등 등산객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 ▷ 국립공원내의 방목가축 구제사업은 위험한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2) 북한산 국립공원 우이령길 탐방예약제 개선

- ▷ 북한산국립공원은 우이령길을 개방하고 인터넷만으로 예약을 받고 있으나 인터넷으로 예약하지 아니하여 현장귀가 조치를 당한 탐방객이 36일간 735명에 이르고 있는바, 온라인·오프라인예약을 동시에 실시하여 현장에서 귀가하는 탐방객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것.

【처리요구사항】

(1) 국립공원 산불 방지대책

- ▷ 경주 국립공원의 경우 금년에만 산불이 3회나 발생하였는바, 국립

공원내 산불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국립공원내의 무단벌목 방지대책

- ▷ 최근 3년간 국립공원의 무단 벌목면적(73건, 46,059m²)이 증가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 국립공원 계곡수 하천수 수질관리 대책

- ▷ 국립공원 내 계곡·하천수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100곳 중 총대장군 군이 높게 나타난 12곳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수생태계 보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것.

(4) 국립공원 구역 해제 문제

- ▷ 개발논리에 따른 무분별한 국립공원 해제요구로 일부 지역에서 공원구역이 해제될 경우 타 지역의 파급효과로 난개발의 우려가 있는바, 국립공원구역 해제사업은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

(5)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처우개선

- ▷ 최근 3년간 신규채용인력의 이직현황을 보면 신규채용인원 187명 가운데 50명이 퇴직하였는바, 공단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 해상국립공원 해양쓰레기 처리 대책

- ▷ 국립공원과 지자체간 책임소재 불분명, 책임전가 등의 문제로 인하여 국립공원중 해상공원의 해양 쓰레기 적치가 심각한 상황인바,해양 쓰레기 처리대책을 강구할 것.

(7) 국립공원내 소수력발전소 설치시 환경영향 저감대책 마련

- ▷ 녹색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립공원내 재생가능에너지 비율 확대사업 중 소수력발전소 설치사업은 주변 경관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시정요구사항】

(1)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 CDM인증 문제

- ▷ 매립가스자원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인증을 추진하여 UN에 사업 등록을 하였으나 이후 CDM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할 것.

(2)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 관련

- ▷ 하수슬러지 자원화 사업 1단계 시설공사는 2008년 12월 준공하여 가동예정이었으나 금년에도 정상가동되지 못하고 있는바, 관련 동공사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여 조치 할 것.

【처리요구사항】

(1) 반입폐기물 관리 관련

- ▷ 주민감시요원 비리문제와 같은 유사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 ▷ 수도권매립지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국제경쟁력이 있으나 주민감시요원 비리문제 등으로 좋지 않은 인식이 확산되는바, 수도권매립지 공사는 이미지 쇄신방안을 강구할 것.
- ▷ 수도권매립지 반입폐기물 수수료 미수금이 2009년 8월말 기준으로 29억원이고 공사출범 이전의 미수금도 17억에 이르고 있어 장기간 해소되지 아니하고 있는바, 장기미수금 회수대책을 마련할 것.
- ▷ 수도권매립지 반입기준 위반차량(2008년 기준 344,240대 중 3.39%인 11,684대)이 줄어들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는 현재 공사가 운영하는 제도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 수도권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관련

- ▷ 수도권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공사, 서울시 등의 기관이 협정을 체결하거나 법개정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 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처리요구사항】

(1) 친환경상품 구매 확대

- ▷ 정부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율이 2007년에 비하여 2008년도에

감소하였고, 특히 국토해양부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이 저조한바, 정부 평가항목에 친환경 상품 구매실적을 반영하는 방안 및 공공기관의 구매율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2) R&D 사업정산 문제

- ▷ R&D 사업정산결과를 보면 위탁기관(회계법인)에서 수행하는 것이 부당 집행액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민간위탁의 경우 R&D 사업의 특성상 기술정산 부분이 취약하므로 R&D 사업정산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직접 수행하도록 할 것.

(3) 녹색성장체험관 운영 활성화

-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녹색성장정책의 대국민 홍보와 이해 확산을 위해 녹색성장체험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하루 평균 199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어 그 실적이 저조하므로 원인 규명과 함께 관람객 유치방안을 마련할 것.

(4) 지하수 수질관리 강화

- ▷ 수자원의 이용 우선순위는 지표수에 있고 지하수는 보조적·예비적 역할로 인식되고 있으나 지하수는 부존량이 풍부하고, 저비용으로도 개발이 가능하므로 지하수 폐공 및 관정관리, 지하수모니터링 체계구축 등 지하수 수질관리 선진화방안을 마련할 것.

▶ 서울특별시 ◀

【처리 요구사항】

(1) 흥익어린이집 관련 석면관리대책

- ▷ 학교·보육시설에 대하여 석면함유 실태, 석면노출 위험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 ▷ 주민감시단이 현장에 상시 출입 가능하도록 하고, 주민감시단 적발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국민감시단 운영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할 것.
- ▷ 피해자 학부모와 협의하여 석면피해에 대한 사후 관리대책(건강검진, 건강영향평가, 암보험 등)을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
- ▷ 석면관리 인력 및 재원이 미비한 상황에서 대대적으로 뉴타운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이므로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운영 중인 석면 관리 체도를 계속 존치시킬 것.

나. 노동부 소관

▶ 노동부분부 ◀

【시정요구사항】

(1) 산하기관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원,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및 폴리텍대학 직원들의 공직기강해이 대한 징계수위가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기강확립을 철저히 하도록 할 것.

(2) 대구북부청 및 포항청의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 감독 철저

- ▷ 대구북부청에서 대구노숙인상담지원센터에 위탁한 사업의 경우 인력소개소에 취업알선을 의뢰한 것과 가사사용인을 취업실적으로 포함시켰고, 포항청에서 포항건설지부에 위탁한 사업의 경우 취업자 전원이 건설일용근로자로 확인됨.
- ▷ 위와 같은 대구북부청과 포항청의 취약계층 취업알선은 실적 부풀리기로 보이므로 지방청의 취약계층 취업실적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3) 고용안정사업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 ▷ 각종 정부 지원금을 노리고 브로커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하여 부정수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최근 5년간 부정수급액이 589억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의 단속 강화, 신고포상제 강화, 인력충원 등 다각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 실업급여·고용안정사업·사회적일자리사업의 부정수급에 대한 업무메뉴얼을 조기에 작성하여 보고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것.

(4) 고용지원센터의 통계관리 철저

- ▷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지원센터 모니터링 결과, 취업알선 등 실적관련 통계의 오류율이 5~6%로 나타나는 등 통계의 정확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5) 일자리관련 사업의 성과부진 시정

- ▷ 일자리대책 사업실적이 8월 말 현재 11개 사업중 5개가 50%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사업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

(6) 노사공동재취업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 실적조작 의혹, 과도한 임금인상 등 국고보조금 방만 집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노사공동재취업센터에 대한 노동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명확한 재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7) 고용지원센터 신규청사 매입관련 절차의 투명성 강화

- ▷ 고용지원센터 신규청사 매입과 관련하여 노동부 퇴직공무원 및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으므로, 청사매입관련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의혹제기가 없도록 할 것.

(8)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

- ▷ 비정규직 모수 추정을 위한 통계조사 강화, 비정규직 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의 근로감독 강화, 세제지원 등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지원 강화, 대학시간강사 및 연구원등의 구제를 위한 시행령 개정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실시할 것.

(9) 산재예방관련 인력과 예산 확보

- ▷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근로자 인명피해, 외국에 비해 높은 산재율, 산업안전감독관 부족, 교통사고 예방사업비 등에 비해 작은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는 10년이상 정채되고 있는 산업재해율의 획기적인 감소를 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산업안전보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규모를 확충할 것.

(10) 대형 건설사 안전관리 부적절

- ▷ 대형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검찰에 의한 무혐의 처분이 상대적으로 높고, 다수의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겸직하고 있으며, 산재요양 미처리 의혹 등이 제기되므로 노동부 적법절차에 따른 점검과 사업주의 예방노력 강화할 것.

(11) 안전검사 위탁에 따른 평가·감독 규정 부재

- ▷ 올해부터 자체검사제도가 안전검사제도로 변경되었는데 노동부가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하면서 이들 기관을 관리·감독할 근거규정이나 계획이 없고, 지정검사기관도 3개 기관에 불과하여 도덕적 해이가 발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12) 우편원격훈련의 적정성

- ▷ 우편원격훈련과정은 사전심사, 모니터링, 훈련과정 등 질적담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질 낮은 훈련으로 고용보험기금사업에서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할 것.

(13)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방지

- ▷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착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세액공제나 조세감면 등 간접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14)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과도한 행정규제 시정 필요

- ▷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고, ILO 협약 제151호에는 공공부문 근로자 단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시민권·정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노동부가 노조법에 대한 과도한 행정해석 등으로 헌법에 보장된 통합공무원노조의 노동 3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대처할 것.

(15) 대한항공 조종사 불법파견 관련 시정 필요

-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외국인 조종사는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접 고용 근로자가 아닌 외국의 인력 공급업체로부터 알선 받은 파견 근로자이기 때문에 두 항공사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해 시정방안을 마련할 것.

(16) 청년인턴제 사업의 철저한 관리 필요

- ▷ 행정인턴의 취업률이 18%, 중도탈락률이 26.5%로 나타나는 등 사업집행이 단기적 처방에 그치고 있으므로 취업을 위한 전문성을 키울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17) 대한안전협회에 대한 자체감사 및 감독 강화

- ▷ 안전협회 수입의 대부분이 노동부 위탁 사업으로 조성되고, 2007·2008년도 안전협회의 정보비 및 기관업무수행비가 전년도에 비해 2배이상 증가하는 등(매월 1억4천만원의 정보비를 지출), 안전협회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기 어려움.
- ▷ 안전협회가 실시한 직무교육의 내용이 안전교육과 괴리가 있고, 교육시간도 산안법상 법정교육 시간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노동부 공무원의 특강에 대한 강사료가 과다하게 집행되는 등, 노동부 직원과 안전협회와의 유착 관계가 우려되는 바 노동부에서 강력한 감사 또는 감독을 할 필요가 있음.

(18)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금 등 자금운용 관련 노동부감사

-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금 1,018억원을 리스크관리 없이 위험상품 주식투자로 500여억원의 손실을 입음. 노동부에서 감사·감독을 통하여 퇴직금 운용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 공제회의 이사장은 국토해양부 고위공무원이고, 전무이사와 감사는 노동부 고위공무원 출신으로 이는 공직자윤리법령에 위배될 수

있음.

(19) 산업인력공단 등 산하기관의 국제입찰 관련 노동부감사

- ▷ 산업인력공단 등이 우즈베키스탄이 대외협력기금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육훈련개선사업의 국제입찰에서 공공기관의 부도덕한 하청계약과 부적절한 입찰과정을 시도함.
- ▷ 공단 등은 우리나라의 국제신뢰도를 추락시켰고, 동 사안으로 인해 외교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동부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향후 유사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20) 물품조달의 부적절성 시정

- ▷ 한기대에서는 노트북, 컴퓨터, 프린트 등의 물품을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특정회사와 수의계약을 통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등 물품구입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물품구입 과정의 수의계약 등에 대하여 노동부에서 강력한 감사 또는 감독을 할 필요가 있음.

【처리요구사항】

(1) 일모아시스템을 통한 중복수혜 점검 철저

- ▷ 정부의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집행에 중복·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집행도 중요하므로 ‘일모아시스템’을 통하여 중복수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을 철저히 할 것.

(2) 범 정부 차원의 청년 니트(NEET)족 방지대책

- ▷ 청년 니트(NEET)족은 빈곤층 확대나, 중산층 붕괴 등의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니트족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청년의 무고용제와 임금피크제의 도입 등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청년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3)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의 내실화

- ▷ 2009년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비정규직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이 땀질식 단순 교육으로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현실을 반영하여 실시하도록 할 것.

(4) 통합공무원노조의 노조법 위반 행위

- ▷ 통합공무원노조가 민노총 가입으로 정치활동에 개입할 개연성이 높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노조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반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할 것.

(5) 부산 예인선노조 진정사건 신속처리 지도

- ▷ 2009년 10월 16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예인선 선장에 대해 노조원 자격을 인정한 결정이 나왔으나, 부산청은 예인선노조측이 8월 17일 제출한 임금체불 진정을 두 달이 넘도록 처리하지 아니하므로 부산청이 노사간 교섭을 중재하고 체불임금 진정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

(6) 정부 및 공공기관 청소원의 임금 실태조사

- ▷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청소원들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급 4,000원을 받지 못하고 임금삭감 및 구조조정을 당하고 있으므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단순노무입찰계약 원가산정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7) 채권추심원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 ▷ 대법원 판례(2008년 11월)에 맞추어 카드사의 채권추심원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을 독려하여 이들의 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8) 건설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요건 강화

- ▷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된 건설업체에서 중대재해 발생 비율이 높으므로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9) 산재관련 고소·고발 시스템 개선

- ▷ 산재관련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기업의 로비로 인해 노동정책이 무력화 되는데 확실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관련법령의 개정 및 행정적 필요 조치를 마련할 것.

(10) 새터민 근로자 산재율 감소 대책

- ▷ 새터민근로자의 산재율이 일반근로자 보다 높고, 산재 미가입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어 실제 산재율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이므로 산재율 감소방안을 마련할 것.

(11) 건설현장추락사고 예방 강화

- ▷ 건설현장 추락사고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고, 5년동안 3200 명이 추락사고로 사망하였는데, 2010년에는 가장 후진형 안전사고인 추락사고를 현격하게 줄일수 있는 혁신적인 해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 건설현장에서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전체 사망사고의 50%를 차지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선진국에 비해 7~25배나 높으므로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것 외에 추락방지방 설치근거 마련 등 후진적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

(12) 대학연구실 안전사고 방지대책

- ▷ 가스안전공사와 산업안전공단에 의한 대학 연구실 안전조사 결과 안전대책이 아주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각 대학의 연구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필요

(13) 시멘트 관련 근로자 산재예방 대책

- ▷ 시멘트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피부질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건강관리수첩교부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고, 관련 질병의 산재인정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관련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와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

(14)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

- ▷ 전국의 타워크레인 등록 부진에 따라 관리 부실로 이어지고 있고, 임대업체는 노후장비를 수입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사고와 관련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타워크레인 공사현장에 전문신호수 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5)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실효성

- ▷ 대구와 광주지역의 계좌제 현황을 보면 기존방식보다 취업률이 저조하고, 전산·조리·미용이나 요양보호사 등의 직종에 집중되어 있으며, 여성의 참여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계좌를 발급받고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 계좌제제도 설계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선책을 강구할 것.
- ▷ 계좌제시범사업은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고, 당초계획에도 없던 신규사업을 실시하면서 과도한 예산배정과 과도한 불용률이 발생하였으며,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한 후 전국적으로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면 전국 실시를 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보이는 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 ▷ 계좌제 훈련이 수요자 중심이라고 하지만 훈련생이 훈련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훈련기관간의 과다경쟁이 발생하여 훈련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

(16)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 확보

-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제도시행 초기단계로 사업장의 인식부족 등의 이유로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바, 동 사업의 통계 중요성을 인지하여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
-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성과가 민간기업에 비하여 공공기관의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17)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률 증대 방안

- ▷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상황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경쟁해서 채용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기업의 직원 채용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배려의 제도화, 비고용의무사업체에 장애인 고용인센티브 부여 및 세제감면 지원 장애인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2010년부터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이 3%로 조정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공기관의 50% 이상이 의무고용률 2%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특성상 고용정원이 늘어나지 않아 인원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장애인 고용의 정원외 인정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임.
- ▷ 여성,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부의 대표적 정책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장애인의무고용제도 등의 실적이 부진하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8) 직장보육시설 설치율 및 지원 확대 방안

- ▷ 직장보육시설 설치율이 저조하고, 이는 사업주의 재정부담이 가장 큰 사유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의무이행률 뿐만 아니라 일반사업장의 보육시설설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보육여건을 개선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 활성화 및 정부차원의 과감한 투자와 정책지원이 전개되어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사업장의 의무이행률을 증가시킬 방안을 마련할 것.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과는 달리 사업주가 거부하더

다도 별척이 없는 등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실적이 저조하므로 실적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9) 교육훈련의 활성화

-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지원,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 비정규직 건설근로자취업향상프로그램,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 등의 교육훈련 사업실적이 저조하므로 사업실적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종합적인 산업인력양성시스템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산업별인적자원 개발협의체를 노동부로 이관하는 것과 산업별 협의체 신설과 산업별 협의체에 노조대표의 참여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20) 임금피크제의 적절한 활용

- ▷ 임금피크제가 해고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21) 취업취약계층 다수고용사업장 및 업종에 대한 점검 철저

- ▷ 여성다수고용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많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법 매뉴얼 개발·보급 및 노무사·여성협회 등을 이용하여 여성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컨설팅 실시방안을 강구할 것.
- ▷ 연소근로자 다수고용업종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가 시작되는 방학전에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청소년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한 후 지도점검 등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22) 반도체 공장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대책

- ▷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반도체 공장에 대한 역학조사에서는 벤젠이 검출되지 않았는데 올 6월부터 실시한 산학협력단의 반도체 공장의 위험성평가에서는 벤젠이 검출되는 등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와 차이가 나므로 재조사 등을 통하여 안전보건공단 역학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필요하면 역학조사를 다시 실시하는 등 신뢰성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23)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ILO협약 비준 확대

- ▷ 2009년 9월 현재 ILO 전체 협약 188개 중 비준한 협약 개수가 24개에 불과하여 OECD 평균인 63개에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ILO협약 비준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24) 이러닝(e-learning) 활성화 대책 필요

- ▷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의 지원한도액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공급기업 등의 수익 악화가 우려되고 있어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이러닝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실시할 것

(25) 택시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 ▷ 1인 1차제 확산에 따라 택시근로자의 근로시간이 1일 15시간이 넘고 있고 업무상 질병 승인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택시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

▶ 서울지방노동청 ◀

【시정 요구사항】

(1) 근로감독관 전문성 부족

- ▷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따른 직무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고, 실제 직무교육도 교육과 무관한 업무지시나 회의 정도의 수준 이어서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강화에 부족하므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 할 것.

(2) 근로감독 관련 각종 서류의 행정편의적 작성

- ▷ 사업주 등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규정과 달리 공문 명의자가 부적정 하게 표시되고 있고, 권위적 문구가 사용되고 있으며, 피의자의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부적정한 사항이 포함되는 등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소속 공무원 기강 확립

- ▷ 소속 직원의 장애인직원 폄훼 발언, 폭력 행사 지칭장 등 서울청 소속직원에 대한 관리와 기강에 문제가 있으므로 소속직원에 대한 기강을 확립할 것.

(4) 공무원단체협약 위반사항 대응 부적정

- ▷ 서울청 소관 공무원단체협약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불이행 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있고, 시정명령에 대한 시정기한을 경과하는 경우 사법조치토록 되어있음에도 조치가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법 절차에 따라 집행할 것.

(5)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엄중조치

- ▷ 야간총회 참석금지 등 사용자의 관리자 동원 투표방해, 조합원 강제 출장·휴가·재택근무, 조기 퇴근 등 조합원의 쟁의찬반 투표를 방해하는 등 근로자의 노동쟁의권 행사와 관련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를 할 것.

(6) 비정규직 대책관련 지방노동청 역할 미흡

- ▷ 비정규직법 시행 후 사업장에 대한 별다른 지도가 없는 등 비정규직법 대책과 관련한 지방노동청 역할이 미흡하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7) 대형 건설현장 발생 중대재해 관리

- ▷ 대형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의2에 의거 동시 2명이상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영업정지, 입찰자격 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

(8) 석면해체 관련 지도감독 강화

- ▷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시 적법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석면해체 허가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현장 지도감독 실시 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9) 흥익어린이집 문제 석면관리 대책 마련

- ▷ 재개발 관련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시 적법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홍익어린이집과 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향후 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건물이나 슬레이트 건물 등의 철거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10) 서울지역 직업훈련기관 불법운영 방지

- ▷ 서울지역은 직업훈련기관간 과다경쟁과 편법, 불법 운영이 잦은 곳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도점검 횟수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기관평가를 늘리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할 것.

【저리 요구사항】

(1) 산업안전감독관 전문성 확보

- ▷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른 서울지방노동청 소속 산업안전감독관의 대폭 교체로 인하여 산업안전 점검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청렴도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간호조무사 근로조건 점검

- ▷ 간호조무사가 생리휴가, 육아휴직, 연차 등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간호조무사의 근로조건 관련 점검과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3) 희망근로프로젝트 참여 근로자의 산재감소

- ▷ 희망근로프로젝트 참가 근로자의 사망자수가 다른 지방노동청에 비

해 많으므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희망근로프로젝트 근로자들이 나이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일부 지청 산하 사업장의 재해율 감소 대책 마련

▷ 태백지청과 영월출장소의 재해율이 높는데 재해율 감소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

(5) 여름철 석면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

▷ 석면철거 작업과 관련하여 철거 과정에서 여름철 작업시 폭염으로 인한 노동환경 악화, 폭염 시 보호장비 착용 부진 등에 따른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

(6) 부정수급 전담인력 확충

▷ 서울지방노동청 소관 실업급여 비중이 전국대비 25%에 달하고 올해 최고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어 부정수급 발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정수급 적발의 사회적 수익 측면에서라도 전담인력 증원하여 실업급여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7) 직업훈련기관 점검 철저

▷ 서울지역은 학원간 과다경쟁과 편법, 불법 운영이 잦은 곳이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도점검 횟수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연 1회로 제한되어 있는 기관평가 또한 최소 2회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할 것.

(8) 산재취약근로자 안전보건 문제

▷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재해자가 전체재해자의 절반을 넘

고 이러한 업종에 비정규직,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가 다수 고용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9) 직업성관련 질환

- ▷ 서울지방노동청 소관 사업장에 고용·작업환경의 변화 및 근로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업무상질병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서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의자 제공 캠페인을 재추진할 필요

▶ 부산지방노동청 ◀

【처리요구사항】

(1) 마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부실

- ▷ 마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주민의 반대로 당초 계획한 장소에 입주하지 못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부산청과 공단지사가 긴밀히 협조하여 동 사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할 것.

(2) 과태료 징수율 제고

- ▷ 부산청의 과태료 징수실적 중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미수납률이 높으므로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3)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점검 철저

- ▷ 2009년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점검실적이 저조하므로 점검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비정규직 고용안정, 차별개선 등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

(4) 노사분규 관리 전담팀 운영 등 파업관리 철저

- ▷ 부산청 관내 노사분규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노사분규 예방을 위해 당분간 노사분규 관리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파업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할 것.

(5) 병역특례자 근로감독 철저

- ▷ 병역특례자들도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에서 병무청에만 맡겨 놓고 병역특례사업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병무청의 요청이 없더라도 노동청 자체에서 근로감독을 강화하도록 할 것.

(6) 취약근로자 고용사업장 재해예방 점검 철저

- ▷ 최근 3년간 외국인, 고령자,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 등 취약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 점검실적이 급격히 감소하고, 올해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의 재해통계가 부산청 전체 평균재해율의 약 2.1배에 이르는 등 취약근로자 고용사업장 재해율이 높으므로 재해율을 낮출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

(7) 재해율 감소 대책 마련

- ▷ 부산지역은 '07년 0.89%, '08년 0.88%로 재해율이 전국최고 수준이므로 부산지역의 재해율을 줄일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8) 외국인근로지도 임금체불 대책 마련

- ▷ 부산지역에서 지난 1년 동안 외국인 상담 건수가 400건 정도인데, 이중 절반이 넘는 220건(55%)이 임금체불 상담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사례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노동청 차원의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것.

(9)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지도·점검

- ▷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을 막을 목적으로 불법노동행위가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지도·점검 등 외국인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

(10) 최저임금 위반대책 마련

- ▷ '07년 대비 '08년 최저임금법 위반사업체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중복 적발 사업주 또는 상습적 위반자들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11) 부산지역 간병협회의 부당회비 징수

- ▷ 부산지역 병원이 직업소개소에 불과한 간병협회와 도급계약을 하고 간병협회는 간병인들로부터 부당회비를 징수하는 등 간병협회의 부당행위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간병인들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노력할 것.

(12) 부산지역 고용률 제고 방안 마련

- ▷ 부산지역은 만성적으로 전국 평균 고용률보다 항상 낮은 고용률을

보여 왔음. 올해의 경우 전국 평균 고용률과의 간극이 5.2% 차로 벌어지는 등 고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안 마련 할 것.

▶ 대구지방노동청 ◀

【처리요구사항】

(1)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 ▶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적발 건수가 2007년 대비 181% 증가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체불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할 것.

(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부실 운영

- ▶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2008년 훈련참여율이 12.7%이고, 2009년 참여율은 35.7%에 불과하는 등 기존의 실업자훈련보다 참여율이 떨어지고, 직업훈련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 일부 가정주부 등의 자기개발 기회로 활용되는 등 부정사용이 적발되고 있으므로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행하도록 할 것.
- ▶ 계좌제가 기존의 실업자훈련보다 취업률이 떨어지고 훈련직종이 음식, 전산, 미용 등 특정직종에 집중되어 있으며,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실적도 매우 저조하므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

(3) 실업급여 부정수급

- ▶ 대구지역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와 부정수금액이 계속하여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의 증가 원인으로 브로커 개입, 2인이상 공모 등 전문지능적인 부정수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전문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사후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4) 사회적일자리사업 부정수급

- ▶ 대구지역 사회적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적발 건수 중 문화관련 단체에서 부정수급이 특히 많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음악 등 문화 관련단체 일체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참여자 허위근로, 부실운영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약정해지 등 엄중조치를 취할 것.

(5) 여성다수고용사업장 점검 철저

- ▶ 2009년 8월 현재 여성다수고용사업장 38개소 중 37개소에서 모성보호 위반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위반이 전체 위반건수의 16.5%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여성근로자의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6)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 ▶ 대구경북지역의 직장보육시설설치 의무이행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7) 실업대책 마련

- ▶ 대구경북지역의 청년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년실업을 해소를 위하여 지역의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할 것.

- ▷ 대구지역의 여성 및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의 실업률이 전국평균 및 청년실업률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지원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할 방안을 강구할 것.

▶ 경인지방노동청 ◀

【시정 요구사항】

(1) 각종 정부지원금 불법수령 방지 대책 마련

- ▷ 경인지역에서 체당금 불법수령사건, 고용유지지원금 및 실업급여 불법 수령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일부 공무원이 기업체와 유착하는 등 직원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2) 석면해체관련 지도점검 강화

- ▷ 경인지방의 경우 100개 현장 중 3~4개만 현장점검을 하는 등 지도 점검이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석면해체 관련 지도·점검을 대폭 강화할 것.

(3) 공무원 노조 관련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조치 강화

- ▷ 인천중구청, 포천시, 안양시의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관련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단체협약 위반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4) 간호조무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시정강화

- ▷ 간호조무사가 생리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

(5) 택시업계 근로자 보호 조치 강화

- ▷ 택시업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누락이 심각하고 촉탁제도 등을 통한 불법고용이 늘고 있어 근로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근로자 복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또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6) 외국인투자기업 노사관계 안정화

- ▷ 외국인투자기업이 2009년 8월말 현재 5319개소로 2008년 3516개 대비 53.5% 증가하였으며 한국 3M, 한국포레시아배기시스템, 파카한일유압, 동서공업 등 노사관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노무관리 인원의 충원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7) 임금체불 방지노력

- ▷ 임금체불액에 있어 경인청이 서울청을 추월하는 등 경기악화로 인한 임금체불이 늘고 있어 전담팀 구성 등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8) 산재예방사업 강화

- ▷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자수의 49%,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여자의 산업재해의 상당수가 경인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산재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산업재해를 줄이도록 노력할 것.

(9) 직업훈련기관 관리 철저

- ▷ 경인청 관할 직업훈련기관 수는 많은 반면 훈련기관 위반사항 적발 건수는 적으므로 특별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기관들을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할 것임.

(10) (주)콜트콜텍 근로자 해고에 대한 적극적 시정

- ▷ 법원의 해고 무효 결정에도 근로자들이 회사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교섭중재, 특별관리감독을 통해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

【처리 요구사항】

(1) 안정적 일자리 나누기 대책 마련

- ▷ 경인지방에서 일자리 나누기 결과 고용 창출된 일자리의 질을 보면 정규직은 554명에 그친데 비해 인턴 등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9배인 5034명으로 나타났음. 일자리 총량을 늘리는 데서 나아가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 마련할 것.

▶ 광주지방노동청 ◀

【시정 요구사항】

(1) 산업재해 예방

- ▷ 영암에 있는 삼호중공업은 추락사가 발생하였고, 산업안전교육의 실시여부가 불투명하므로 감독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하고 노사자율안전업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할 것임.

(2) 광주지역 시내버스 채용 비리

- ▷ 광주지역 시내버스가 준공영제 시행이후 운전기사의 정규직전환 등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 수수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채용비리 문제에 대하여 조사 및 해결책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버스기사의 차별문제를 조사하여 시정할 것.

(3) 사회적 일자리기업 선정 및 관리 대책

- ▷ 사회적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송광종합사회복지관이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파견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는 것은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심사과정을 개선할 것.
- ▷ 사회적기업 특별점검 결과 점검업체 146개소 중 144개소가 지적을 받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하므로 사전예방계획을 수립할 것.
- ▷ 광주청의 사회적일자리사업의 실적이 우수하나,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을 위한 업무매뉴얼 마련 등 방지대책을 세울 것.

(4) 노사분규 원만한 해결

- ▷ 광주청 관내 사업장은 경기변동에 민감한 업종이 많아서 경기에 따라 노사갈등이 양산될 소지가 높은 지역이고, 노사분규 발생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제주오리엔탈호텔의 경우 노조원이 복직판정되었으나 원칙으로 복직시키지 않는 등 노사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으므로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에 대해 원만한 해결을 위한 대응책 강구

(5) 위법한 공무원노조의 단체협약에 대한 조치

- ▷ 공무원노조의 위법한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시정조치명령도 하지 않고, 시정명령한 곳은 이행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시정조치명령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할 것.

【처리 요구사항】

(1)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증대

- ▷ 광주지역 여성경제활동률이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낮고 광주청 관할 전남·북 및 제주지역에 비해서도 낮으므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업주 인식을 개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2) 여성가장실업자의 취업률 제고

- ▷ 실직여성 중 60%가 여성가장이며, 여성가장실업자의 취업률이 11% 정도로 저조하므로 여성가장실업자의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심층상담 실시, 구인 및 구직 등 취업률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3) 산업재해 예방

- ▷ 대불공단의 100인 이하 사업장의 공단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초보적인 안전보건조치로도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단내 산업안전점검을 위해 지역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대불공단내 응급의료시설이 없으므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응급의료 시설 설치를 검토할 것.
- ▷ 3대 다발재해 취약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처벌강화, 사업장별 심층분석을 통한 교육, 재정, 기술지원, 일선기관 인력충원 및 재배치 등 특단의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 광주청 산업재해율은 낮으나 사망사고 재해율이 높으며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및 임업, 조선업 등 지역산업에서 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적합한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4)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 방지 대책

- ▷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율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한 특별점검이나 모니터링 제도 등 대책을 강구할 것.
-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액이 전체 지방청 부정수급액의 46%이고 서울, 부산, 대구청의 3년간 부정수급 총액보다 많으므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 남경이엔지, 대지개발진흥의 체당금 부정수급의 경우 모두 제보자의 제보에 의해서만 적발한 것이므로 기업인·근로자관련 유관기관 사이에 충분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하여 체당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

책을 마련할 것.

(5) 실업률 해소 방안 마련

- ▷ 전북지역 청년실업률이 높고 고용률이 최하위이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 관내 지역간에도 전체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청년실업률(6.7%)이 실업률(2.3%)의 2배가 넘으며 지역별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바, 원인을 분석하여 전체 실업 및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6) 제주도 출장소 설치

- ▷ 제주노동지청 폐지에 따라 제주도의 근로감독, 노사문제 협의 등의 업무가 광주지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부실한 감독이 지적되는 바, 제주지역 출장소를 설립하여 제주도의 근로감독 및 노사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안을 강구할 것.

(7) 행정기관 시정 조치

- ▷ 행정기관에 시정명령내린 11개 기관중 3개 기관이 완료되고, 나머지는 시정중이며, 시정기한을 연기한 곳이 일부 있으나, 여전히 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시정기한을 준수하여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8) 지방고용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 ▷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지방고용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회의가 서면으로 대체되었고, 광주청의 경우 전문위원회가 구성도 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지방노동청이 실업문제

에 앞장서도록 지방고용심의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할 것.

▶ 대전지방노동청 ◀

【시정 요구사항】

(1)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개선

- ▷ 사회적일자리 실적이 부진하고 태안 기름유출사고와 관련된 일자리를 사회적일자리로 실적을 보고하고 있으나, 태안 기름유출사고 관련 일자리는 사회적일자리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시정할 것.

(2) 공무원노조의 위법한 단체협약 시정

- ▷ 공무원노조의 위법한 단체협약이 있을 경우 조속한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3) 콜텍 근로자 해고 관련

- ▷ 콜텍사장이 지회장과 간부 2명을 해고한 것과 관련하여 충남지노위와 중노위, 행정법원도 부당해고로 판정했으나, 복직시키지 않고 있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리감독 강화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
- ▷ 콜텍은 2000.7월부터 2007.6월까지 총63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정리해고를 시행하였으므로 서울청과 긴밀한 협조하에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 요구사항】

(1) 석면 관리

- ▶ 석면해체·제거작업 허가가 증가하였고,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대한 점검실시업체의 위반율(91%)이 다른 청에 비하여 높은 편이며, 탈크사업장 일제점검 결과 탈크제품 총 19종 중 8종에서 제조금지 물질인 석면성분이 검출 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한 바, 작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할 것.

(2)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 부정수급 방지 대책

-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 ▶ 대전청에서 (사)내일터 사회적기업 인증 당시 대표가 부정수급 혐의로 고발되었는지를 알면서 사회적기업 신청에 대한 인증을 해주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과 관련하여 부정인증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 2007년 대비 6개청 평균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가 20% 상승한 반면에 대전청은 60%나 증가하여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3) 산업재해 예방

- ▶ 3대 다발재해 취약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처벌강화, 사업장별 심층분석을 통한 교육, 재정, 기술지원, 일선기관 인력충원 및 재배치 등 특단의 개선대책 마련

- ▷ 무자격의사를 고용하거나 산업의학전문 의사가 아닌 일반전문의를 고용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취소되었으므로 검진 받은 근로자들에게 재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안전보건분야 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대전청의 재해율은 낮으나 중대재해가 많고 1만명당 1.3명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으므로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 ▷ 한국타이어 심혈관계 질환에 대하여 사업장 자체의 작업환경에 문제가 있으나 나타난 원인규명이 명쾌하지 않아 신뢰할 수 있는 역학조사가 필요하므로 더욱 세밀한 연구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분야를 발전시키도록 노력할 것.

(4)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적 개선

- ▷ 대전청의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발급건수는 타 지역에 비해 부진하고 계좌제 승인 훈련과정 수도 전체 점유율의 9.2%에 불과하나, 계좌제 취업률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계좌제를 활성화시킬 것.

(5) 취업률 증대 방안 마련

- ▷ 대전과 충남이 전국평균과 다른 지역에 비하여 청년실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대전청이 중심이 되어 지역내 유관기관간 연계를 통하여 일관된 대책을 추진하여 이를 해소할 방안을 강구할 것.
- ▷ 새터민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실적이 노동부 6개청의 평균목표 달성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6) 지방고용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 ▷ 지방고용심의위원회를 1년 1회 서면으로 개최하고 있어 고용 및 실업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법에서 규정된 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어 지역차원의 인적자원개발에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

(7)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 관리 철저

- ▷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증빙자료 첨부, 충실한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시정요구사항】

(1) 노사정위의 대표성 강화

- ▷ 노사정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사정 어느 일방의 탈퇴·불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노사의 대표성 보완 및 위원구성의 다양화를 위하여 민주노총의 참여와 노동계 산별연맹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참여를 검토할 것.

(2) 의제별위원회 위원의 중복참여 지양 및 효율성 강화

- ▷ 노사정위원회가 의제별·업종별 위원회 체제로 변경되어 노사정위원의 중복참여와 회의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

책을 마련할 것.

(3) 업종별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

- ▷ 노사정위원회에 의제별 위원회가 2개만 존속하게 되는 것은 의제발굴이 소홀한 결과로 보이며, 향후에는 의제별 논의에서 벗어나 업종별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것.

(4) 노사정위원회의 자율성 확보

- ▷ 사회적합의 도출을 위한 노사정 참여기구로서 노사정위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의 원활한 재개와 합의 이행을 보장받기 위해서 노사정이 참여하는 정책 아이디어와 메뉴를 개발하도록 할 것.

▶ 중앙노동위원회 ◀

【처리요구사항】

(1)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활용 저조

-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활용이 저조하고, 신청 후의 불이익의 우려와 비교대상 및 차별영역의 확정 등 요건 충족의 어려움 등으로 당사자들이 불만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차별시정 공익위원의 구성 다양화

- ▷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중 교수와 법조인이 78%(차별담당 공익위원 92%)를 차지하는 등 특정 연령, 성별, 직업군이 다수를 차지하여 인적구성이 편중되어 판정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법정 자격을 보유한 인사들 중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의 다양화

- ▷ 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중 중노위 위원장과 경기지노위 상임위원 등을 제외한 상임위원 17명이 노동부 관료 출신으로 임명되고, 노동위원회의 관료화가 위원회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상임위원을 민간전문가로 임명되도록 노력할 것.

▶ 근로복지공단 ◀

【시정 요구사항】

(1) 산재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

- ▷ 산재의료기관 현장 조사 결과 점검 의료기관의 90%이상의 기관에서 허위청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처분 등 예방대책을 세울 것.

(2) 산재보험 부정수급조사 활성화

- ▷ 산재보험 사기와 관련해서 부정수급 적발건수 및 회수율이 저조하고

수행조직도 임시조직으로 공적자금의 회수에 대해 소극적이므로 기획조사 등 민간의 기법을 받아들이고 관련 조직을 확대하는 등 부정수급 회수를 활성화할 것.

(3) 보험료징수 및 산재급여 업무 철저

▷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 산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이 보험료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는지 확인하지 않거나 잘못 적용하는 등의 업무소홀로 인해 추징되거나 반환되는 사례가 다수 발행하고 있고, 불친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산재급여 지급심사의 부실로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공단의 신뢰 회복과 직원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 요양비 대부사업의 집행부진

▷ 요양비대부사업의 집행이 저조한데 이는 대부조건에 맞는 환자가 거의 없고, 복잡한 공단의 신용보증 절차 등으로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산재환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5) 보험료징수 통합에 따른 비용의 국가 부담

▷ 4대보험 통합과 관련하여 전산시스템 비용과 같이 새로운 수요가 발생될 경우, 새로운 운영 틀을 바꾸는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이 정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

(6) 공단 대부사업의 실적 부진

▷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신규실업자 훈

런생계비 대부사업 등의 집행실적이 저조한데 대부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것도 한 원인이므로 실직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대부사업 집행이 원활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7) 보험업무 대행기관의 지원금 알선 등

- ▶ 보험사무 대행기관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하는데 대행기관은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에 대한 안내는 할 수 있으나 지원금 업무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도 실제로 지원금 업무 대행과 수수료를 받고 있으므로 실태조사와 불법수수료지급에 대한 조치 필요

(8) 경기보조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등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통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일부 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징수한 후 임의로 적용제외 신청을 하거나 근무 중인 근로자를 퇴사처리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시정조치토록 할 것.

【처리 요구사항】

(1) 반도체공장 근로자 산재승인 요건 완화

- ▶ 반도체공장 백혈병 환자에 대한 산재 불승인과 관련하여 입증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명백한 역학관계 및 자문의사의 소견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반도체공장 근로자의 산재승인 요건 완화 등

(2) 산재장애자의 원직장복귀율 저조

- ▷ 산재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고 그 장애로 인해 직업을 잃는 것은 상당한 문제인데 산재장애자 원직장복귀율 특히, 30대 미만 근로자의 원직장복귀율이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산재근로자가 원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각별한 대책을 수립할 것.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활동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기피신청률이 저조한 것은 기피제도 홍보가 미흡하고 기피신청을 위해 위원명단과 소속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며, 판정대상 상병 전문가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위원회 활동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것.

(4) 산재의료원과의 통합

- ▷ 통합추진체계가 노동부,공단, 의료원으로만 되어 있고, 전문가들의 참여가 배제되고, 상충되는 기관을 통합하는 것은 시너지 효과보다는 의료원이 개척해야 하는 서비스와 공단의 공공성이 상충되어 좋은 결과를 낳기 어려울 수 있어 통합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병원종사자 등 관계인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투명하게 진행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할 것.

(5)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차별 시정

- ▷ 비정규직법 시행 후 공단의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차별이 없도록 할 것.

(6) 신종플루 관련 업무상질병판정 지침 개정

- ▷ 9월 신종플루 관련 업무상질병 판정기준에 대한 경총 등과 노총 등의 입장이 상이하므로 관련 지침개정은 질병관리본부 등 의학계의 자문을 받아 신중하게 할 것.

(7) 해외파견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

- ▷ 해외파견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미적용과 관련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대처가 소홀한데 좀 더 능동적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파견근로자를 산재보험에 의무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8) 청년인턴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 적용 부적정

- ▷ 공공부문 청년인턴 일자리 사업에 높은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일자리창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희망근로 사업과 같이 보험료율을 별도로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9) 유족 및 장애특별급여 활성화

- ▷ 유족 및 장애특별급여 도입 이후 급여실적이 저조하므로 보상수준을 높이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10) 심사인력 충원

- ▷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심사인력을 충원하여 현장조사를 포함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증거조사 등으로 공정

한 심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11) 청년인력 채용 확대

- ▷ 인턴근무를 통해 검증된 자원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3%이상으로 청년고용을 늘리도록 노력할 것.

▶ 한국고용정보원 ◀

【시정요구사항】

(1) 워크넷 기능강화

- ▷ 하드매칭 시스템으로 인한 사용자들의 불만족이 발생하고 있으며, 워크넷을 이용한 취직자의 고용유지율이 미이용 취직자보다 낮게 나타나는 등 고용정보의 만족도 및 품질에 있어 문제가 있으므로 워크넷의 기능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

(2) 워크넷 장애인 웹접근성 강화

- ▷ 워크넷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이 떨어져 장애인로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

(3) 일모아시스템 강화를 통한 중복수혜자 방지대책 마련

- ▷ 정부지원 일자리사업에 있어 중복수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일모아시스템을 강화하여 중복수혜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처리요구사항】

(1) Job School 활성화

- ▶ 청소년 직장체험학습 프로그램(job school)에 대한 성과가 좋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확보하여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

▶ 한국산업인력공단 ◀

【처리요구사항】

(1) 해외취업연수

- ▶ 해외취업연수를 통한 해외취업 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2) 외국인근로자의 비공식 송출비용 조사

- ▶ 2009년 시민단체가 실시한 ‘이주노동자 노동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MOU 체결국의 외국인근로자 비공식 송출비용이 공식 송출비용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노동부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실제 송출비용 조사, 사후관리업체 조사 및 귀국비용의 편취조사 등을 실시할 것.

(3) 직업방송의 시청률 저조

- ▷ 인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방송의 시청률이 0.071%로 저조하고 한국경제TV에서 VOD로 송출하는 외에 직업방송위크티비 (www.worktv.or.kr)에서 똑같은 VOD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하루에 226명 정도가 시청하는 등 직업방송의 성과가 저조하므로 사업에 대한 성과를 전면 재검토 할 것.

(4) 자격검정시험의 관리 철저

- ▷ 공단에서 실시하는 자동차정비기능장 실기시험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어 출제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5) 한국어능력시험의 관리 철저

- ▷ 한국어능력시험 관리·운영기관이 공단으로 일원화 된 이후에도 송출 국가의 관행과 문화의 차이로 인하여 2년만에 한 나라에서 47건의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등 한국어능력시험의 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

(6) 해외취업자 관리 철저

- ▷ 해외취업자 관리가 재외공관을 통하여 일반적인 교민관리와 같이 이루어지고 공단측에서는 현지 출장을 통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 해외취업은 실적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7) 우수 기능인력 지원

- ▷ 지방기능경기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우수기능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입상자 사후관리 DB를 구축하여 기능인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8) 국가자격검정시험

- ▷ 국가자격검정 응시수수료 수입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익자인 수험자를 위한 자격검정 질 제고에 전액 사용될 수 있도록 자격검정 사업의 수·지차를 개선함과 동시에 응시수수료의 과도한 인상을 자체하기 바람

(9) 마산외국인근로자센터의 부실운영

- ▷ 마산외국인근로자센터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건물이 주상복합아파트로 주민의 반대의 의해 입주할 수 없고, 임시 개원한 센터도 부실 운영되고 있으나,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나 지방노동청의 협조를 얻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할 것.

(10) 외국인노동자 취업교육 강화

- ▷ 외국인 노동자 사전교육이 계속 줄어들고 있음. 교육의 부족은 작업의 미숙련, 언어 소통문제를 야기해 산업 재해율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교육 강화 할 것.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시정 요구사항】

(1) 국가정보원과의 업무협약 부적정

- ▶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과 국정원과의 업무협약은 부적정하므로 조사 후 담당직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

(2) 산업안전보건연구 연구과제 수행 부적절

- ▶ 연구원에서 발행한 연구자료를 보면 비문이 많고, 번역도 엉망이며, 편집의혹, 재탕의혹, 번역오류 등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므로 연구용역 검수를 철저히 할 것.
- ▶ 자체과제 비율이 너무 낮고, 자체 연구과제 정책반영률이 저조하며, 위탁과제가 많아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으므로 연구원이 자체과제를 선정할 때, 정책반영 가능성을 고려해서 불필요한 외부 위탁 과제를 줄이고, 자체연구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보급이 안전공단의 직무임에도 연구용역 평가위원들이 연구용역을 수주하는 등 입찰에 의혹이 있으므로 연구용역심의과정과 내용을 전면 조사하여야 할 것임.

【처리 요구사항】

(1) 조선업 관련 근로자의 석면피해 최소화

- ▶ 조선업 관련 근로자의 석면에 의한 산재인정과 건강관리 수첩 발급이 저조하므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수첩발급기준 완화하는 등 조선업 관련 근로자의 석면에 의한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2)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안전교육

- ▶ 건설근로자 안전교육 이수자 중 정규직 근로자, 노인, 실제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등 당초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하고 있는데 향후 건설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훈련기관 관리감독 등 개선방안 강구할 것.

(3) 안전검사, 안전인증의 민간위탁 문제

- ▶ 현재 산재가 줄어들고 있지 않으며 3대다발 재해도 높은 실정이고 공단 소속 직원의 전문성이 더 높은데도 효과적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안전 검사 및 인증업무를 민간에 이양하였으나, 이후 산재율의 감소도 없고 검사인증 불합격율이 1/3로 줄어들고 있는데 근로자 안전을 위해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관리소홀이 없도록 할 것.

(4) 서비스업종 산업재해예방 노력 필요

- ▶ 서비스 업종에서 매년 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들 업종의 재해예방을 위한 획기적 방안을 마련할 것.

(5) 클린사업장 재인정 부진

- ▶ 클린사업장 지원 사업자에 비해 재인정되는 사업장 수가 적고 재인정신청이 부진한데, 이는 공단의 안내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향후 적시에 안내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 개성공단 산재예방교육 미실시

- ▶ 개성공단에 대해 산재예방을 위한 정밀안전점검 및 교육이 2009년에는 실시되지 않고 있어 금년 산업재해가 증가하였는바 남측근로자의 산재예방 뿐만 아니라 산재예방교육 실시로 북측 근로자의 교육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개성공단의 산업재해예방 대책을 강구할 것.

(7) 산재예방 홍보비의 적정 집행

- ▶ 산재예방 홍보와 관련하여 방송광고비가 특정 방송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8) 휴일 건설현장 재해예방 관리 철저

- ▶ 토요일·일요일과 같은 휴일에도 산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기술지원 시스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9) 재해예방 경보·예측 시스템 구축

- ▶ 경기변동에 따라서 재해율도 변동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경기변동 등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재해예방 경보, 예측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재해예방을 위한 과학적·체계적 노력 필요하며, 특히

직원교육을 통한 업무역량을 강화할 것.

(10) 클린사업장지원 사업 강화

-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사망자는 전체 재해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사업장 지원 일환으로 추진된 클린사업장지원 사업결과 재해예방효과를 나타내고 있기는 하나, 관리감독자의 안전교육을 적극 활용하는 등 재해예방효과 제고방안 마련 필요

(11) 작업환경실태조사 관리 강화

- ▷ 2009년 실시하고 있는 ‘작업환경실태조사’ 와 관련하여 비용절감, 조사의 신뢰도, 공단의 역할, 사업관리 등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향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

(12) 반도체 공장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대책

- ▷ 반도체 업체 근로자의 암 발병 등 산재 예방 관련 장기 대책 필요

(13) 외국인근로자 안전교육

- ▷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수가 점차증가하면서 사업장 여건상 재해자수가 늘어나고 있어 이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교육 필요

(14) 임업 및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관련 재해예방 대책 필요

- ▷ 숲가꾸기 등 임업관련 정책사업 확대에 따라 재해가 증가하고 있고, 희망근로프로젝트 참여 근로자의 재해율은 전 업종 평균보다 2배 가

까지 높은 실정이므로 안전교육이수를 전제하여 채용하는 등 특단의 재해예방대책을 강구할 것.

(15) 건강진단결과 제한적 제공의 개선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의 제한적 사업주 제공은 ‘질병발생 전 사전예방’에서 ‘질병발생 후 사후관리’로 전환시켜 근로자 건강관리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고, 의무채용 산업의사 등 보건관리자의 기능을 위축시켜 사내 산업안전보건체계를 대폭 축소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16) 석면 안전성평가 수행 주체

- ▷ 석면 해체·제거업자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성평가를 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인 공단이 수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7) 타이어 제조사업장 보건업무 강화

- ▷ 타이어 제조사업장에 대한 고무흙 등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조직문화로 인한 스트레스 등에 대한 전면적 역학조사를 실시하되 유해환경, 위험한 작업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현장노동자를 참여시키는 등 타이어 업종 보건업무 강화를 위한 노사정협력체계를 구성할 것.

(18) 특수형태근로자 산재예방 강화 대책

- ▷ 특수형태근로에 대한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논란은 논외로 하더라도 실제 산업현장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산업재해통계 및 실태파악을 하고, 재해에 대한 예방관리가 필요하며, 그 역할은 공단에서 해야 할 것.

(19) 대형건설공사에 대한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 제도

- ▷ 대형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형건설사에게 일방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자율안전관리업체 제도운영 강화 또는 폐지와 함께 공단의 건설공사현장 안전점검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

(20) 신규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 ▷ 신규제품 개발시 유해성조사에 대해 사업주 자체 검사의 경우 사업주의 ‘유해·위험성조사보고’를 노동부에 제출하여 노동부의 의뢰가 있을 때만 검토하는 것보다 공단에서 신규제품 유해물질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는 팀을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시정 요구사항】

(1) 보조공학기기 지원

- ▷ 일부지사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회수된 기기의 재활용률이 낮으므로 보조공학기기의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공단직원 경징계의 부적정

- ▷ 공단직원이 불법안마시술소에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와 직

접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에 처한 것은 경징계로 보이는 바, 비리정도가 심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징계할 수 있도록 공단 징계절차를 개선하도록 할 것.

【처리 요구사항】

(1) 직업능력개발센터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

- ▷ 센터의 정규직 교사나 직원의 경우 맞춤형 훈련이나 취업실적 부담 때문에 교육에만 전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신기술이 필요한 경우 기존교사는 능력향상에 힘쓰고 맞춤형훈련시 강사풀 등을 구성하여 유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한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
- ▷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사 등 상시적이고 필요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는 비정규직 보다는 정규직이 적합하므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장애인고용율 제고방안

- ▷ 고용부담금 미수납자의 유형이 다양하므로 미수납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과 공공기관 중 장애인 미고용기관 및 의무고용제도 미준수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의무고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한 기업 중 30대 기업집단에 포함되는 대기업의 비율이 저조한 바, 대기업과의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하

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 사회적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율에 미달하는 기업,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고용제고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 서울지역 기업의 장애인 고용율이 저조하므로 고용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고 지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3)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방지

- ▷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은 기업지원제도의 건전성 확보, 장애인 고용기금의 안정적 운영, 장애인 고용에 대한 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근절되어야 하므로 대책방안을 마련할 것.

(4) 장애인근로자의 처우 개선

- ▷ 장애인근로자가 수령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수준이거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므로 사업체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통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는 등 대책방안을 마련할 것.

(5) 장애인고용정보시스템 활성화

- ▷ 장애인고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장애인의 수가 급증한 반면, 공단을 통해 구직등록하는 장애인 수가 감소·정체되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구직등록하는 장애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취업서비스 분야에서 장애인고용정보시스템이 제 역할을 찾을 방안을 마련할 것.

(6) 장애유형에 따른 지원고용 다각화

- ▷ 지적 및 정신장애인 외 다른 장애유형의 지원고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원고용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장애유형별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7) 직업훈련생의 훈련비 현실화

-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에 참가하는 장애인에 대한 훈련비가 비현실적이어서 중증장애인의 참여유도가 쉽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참여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훈련비 현실화 대책을 마련할 것.

(8) 채용박람회 참여업체 다양화

- ▷ 채용박람회 참여사업체 업종은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이 전체의 78%를 차지하는 바, 채용박람회 참여업체의 업종을 다양화할 것.

(9)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대

-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중증장애인 고용확대에 좋은 제도이므로 홍보를 강화하여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한국산재의료원 ◀

【시정 요구사항】

(1) 퇴직의사 퇴직금 산정방식 부적정

- ▶ 산재의료원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대한 노동부 유권해석 및 법원의 판결과 달라 그 내용을 알고 소송제기나 진정 등을 통해 신청한 사람에게만 합의나 지급명령, 법원판결에 따라 퇴직금이 추가 지급되고 있는데, 향후 이어질 소제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상위법규와 상충 문제 뿐만 아니라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적극적 조치노력 필요

(2) 특진포상비 부당지급

- ▶ 산재의료원 산하 일부병원에서 특진포상비가 부당지급되는 사례가 있고, 그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특진포상비 등 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감사의 겸직

- ▶ 감사의 겸직근무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의료윤리적 관점에서 하자가 있고, 산재의료원이 공공기관 선진화와 관련하여 산재전문병원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온당하지 못한 인사이므로 적법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

(4)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소홀

- ▶ 정부산하기관은 퇴직급여충당금을 매분기별로 우선적으로 적립해야

함에도 적립없이 결산시 부채로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일시에 다수의 임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총당금 적립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 요구사항】

(1) 적정 인건비 집행

▷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연차휴가보상금 집행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가능 평균일수 중 실제 사용일수가 미미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과도한 유급휴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재정적자의 원인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2) 비정규직 해고인력 대책 마련

▷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해고되는 직원 중 병원에서 상시 필요한 인력이 있으므로 이들의 해고관련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해고 예정 인력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3) 대구재활전문병원 공사 지연

▷ 대구재활전문병원 공사가 토지매입지연과 문화재발굴조사로 인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대구시 및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조속히 사업을 진행할 것.

(4) 응급의료 전문의 확충

▷ 재해근로자의 빠른 기능회복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서 정확한 진료와 함께 신속한 응급의료가 동반되어야 하는데, 산재의료원 소속 병

원의 응급실 운영이 열악하고 응급의료 전문의가 없는 병원도 있으므로 응급의료전문의를 충원할 방안을 강구할 것.

(5)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의료원 접근성 강화

- ▷ 늘어나는 외국인근로자와 관련 산업재해 피해자의 증가에 따라 이들의 치료를 위해 산재의료원 산하 인천중앙병원과 안산중앙병원에 외국인 전문병동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접근성이나 홍보 문제로 입원환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원활한 외국인 산재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통역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6) 산재의료기관 당연지정 관련 헌법소원 대처 필요

- ▷ 산재근로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해 산재의료기관으로 당연지정되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직업수행자유, 영업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는데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헌법소원제기 병원과 협의하여 조속히 해결토록 할 것.

▶ 한국폴리텍대학 ◀

【시정 요구사항】

(1) 학장임명의 공정성

- ▷ 학장의 공개모집시 명백하게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된 학장은 교육경력이 전무하므로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교육훈련 및 직업훈련 관련분야 전문가를 학장으로 임명하여야 할 것임.

(2) 캠퍼스의 철저한 관리 필요

- ▷ 기능사과정의 미취업자를 취업자로 허위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대학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데, 이는 대학의 캠퍼스가 많아서 관리가 힘든 것으로 보이는 바, 철저한 관리가 필요

【처리 요구사항】

(1)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이행

- ▷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해고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컨소시엄사업의 비정규직을 12월말 해고할 예정인 바, 해고를 철회하고 계속 고용 대책을 강구할 것.

(2) 기업전담제 확대실시 필요

- ▷ 기업전담제는 1사 1학과 운동과 유사하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의 양성과 청년실업해소를 위하여 확대실시가 필요함.

(3) 교내 안전사고 예방

- ▷ 학사과정에 집중된 교내 안전사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안전교육 실시, 연구실·위험물 안전진단, 상해 및 재해보험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

(4) 북한이탈주민 기초직업적응훈련 강화

-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초직업적응훈련 과정이 단순하고 현장성이 미흡하므로 다양한 직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통일부와 협의하여 개선할 것.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처리 요구사항】

(1) 졸업생의 취업 관련

- ▷ 졸업생의 교사 자격증 취득률은 높은 반면 취업률은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졸업생의 비정규직 취업률이 증가세이므로 기술력 높은 우리 학생들이 외국어 능력을 갖추고 외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해외취업이 가능토록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별도 마련할 것.

(2) 노동행정연수원 원활한 운영 필요

- ▷ 노동행정연수원으로 통합된 이후 (구)한국노동교육원 직원 직급부여와 관련한 형평성 제기가 있으니 이를 시정하고, 공무원노동관계전문가 양성교육 적극 실시 및 노동행정연수원의 교육실적이 낮은 부분에 대한 교육진행을 독려하며, 노동조합과의 마찰을 최소화 할 것.

- ▷ 취약계층 권리보호 교육의 집행은 전무하고 공무원 및 교원노사관계 교육의 사업계획은 양적으로 부족한 등 교육과정마다 집행실적 및 사업계획에 차이가 많이 나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3) 노동행정연수원 충북혁신도시로 이전

- ▷ (구)노동교육원이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라 충북혁신도시로 이전될 예정이었는데, (구)노동교육원의 폐지에 따라 노동행정연수원이 충북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바,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이전여부 및 향후 추진계획을 재검토할 것.

(4) 신입생 입학의 형평성 고려

- ▷ 일반계와 전문계 고교학생의 입학시 입시설명회, 입학정원 등 일반계과 전문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입학전형을 할 것.

(5) 기술개발연수사업의 전문계교 교사 참여 확대

- ▷ 전문계교 교사들이 신기술에 대한 연수를 받아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연수사업을 확대할 것.

(6) 사전 안전사고 예방

- ▷ 재검사기간이 경과된 미검사 가스용기와 실험실내 콘센트 과열로 인한 열화현상 등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대형사고가 우려되므로 이를 개선할 것.

(3) 기상청 소관

▶ 기상청 ◀

【시정요구사항】

(1) 인터넷 비난여론에 대한 과잉 대응

- ▷ 기상청이 홈페이지 게시판의 비난여론에 대해 과잉 대응을 하고 있어 여론통제로 흐를 가능성이 있는바 대응수준을 합리적으로 재고할 것.

(2) 기상관측사업 R&D 평가 기준 정비

- ▷ 기상관측 사업에 대한 기상청의 국가 R&D 자체평가 결과와 기획재정부 상위평가 결과 간에 3년 연속 차이가 나고 있는바, 양자간에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평가 기준을 정비할 것.
- ▷ 지진기술개발사업 성과가 저조한바, 장비 개발 등 특허 출원이 가능한 분야의 지원 확대를 통해 성과 제고에 노력할 것.

(3) 4대강 기상·기후 영향평가 철저 시행

- ▷ 대규모 국토개발에 따른 기후 및 기상변화에 대한 영향평가 연구가 필요하며, 4대강 환경영향평가 중 기상에 대한 영향 평가 부분이 국립기상연구소의 연구결과와 다른 부분이 있는바, 기상부문 환경영향평가의 기술개발과 보급을 지속 추진할 것.

(4) 남·북 기상협력 강화

- ▷ 황강댐 방류로 인한 사고 등을 고려할 때, 임진강 수해방지 남북 당국자간 회의 등과 관련하여 기상청의 역할이 중요한바, 통일부와 협의하여 기상부문의 남북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북한 지역 강수량 정보 등을 기상청에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처리요구사항】

(1) 기상부문 R&D 효율화

- ▷ 기상청 연구개발비의 대부분이 대학의 기초연구 지원에 사용되고 있는바, 현업화·실용화 기술 개발 투자 비율을 높여야 함.

(2) 지진관측 및 예보

- ▷ 일본 및 우리나라 주변에서 지진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결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해외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지진해일경보 및 지진조기경보 발령 시스템을 구축할 것.
- ▷ 최근 남태평양 및 인도네시아 쓰나미 피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지진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으나 유관기관 지진관측 연결망의 31%가 미공유 상태인바, 미공유된 지진관측 연결망의 공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세울 것.
- ▷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주요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

으므로 소방방재청 등 관련 부처들과 협조 체계를 구축할 것.

(3) 통신해양기상위성 발사 및 후속 사업

- ▷ 통신해양기상위성 발사에 국민적 자부심 고취를 위해 이름을 만들어 홍보를 강화하고, 현재 발사 준비 중인 통신해양기상위성의 후속 위성사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여 기상관측 임무 승계에 차질이 없게 할 것.

(4) 우주기상 부문 강화

- ▷ 우주기상의 영향이 전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본법조차 없는바, 우주기상 기본법 제정 추진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를 조속히 할 것.

(5) 대구기상대의 승격

- ▷ 대구기상대 이전을 위한 부지 확보를 신속히 하고, 대구기상대를 대구지방기상청으로 승격하도록 할 것.

(6) 기상관측자료 통합

- ▷ 중복된 관측시설이 반경 100m 와 1km 합계 기준 17.1%에 달하고 있으나, 작년 기상관측표준위원회의 조정계획 심의 확정 결과가 부진한바, 2011년까지 100% 통합 목표의 달성을 위해 기상청이 적극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기관간 협조를 이끌어 낼 것.
- ▷ 기상레이더가 기상청, 공군, 국토해양부 등 5개 기관에서 각각 운영중인바, 통합운영을 통해 비효율을 시정하고 예보정확도를 향상

시키도록 할 것.

- ▷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국내외 기상관련 자료의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

(7) 동네예보 개선

- ▷ 2009년 상반기 기상업무만족도 조사 결과, 동네예보 인지도가 낮으므로 방송, 신문 등 일반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동네예보를 초단기예보 및 주간예보까지 확장하도록 노력할 것.

(8) 슈퍼컴퓨터 3호기

- ▷ 슈퍼컴퓨터 3호기 계약체결 과정 중 2단계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크레이 코리아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는데, 향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부분에 대해 지속적 검증을 할 것.

(9) 안개 특보제 실시 관련

- ▷ 안개특보 시험운영 결과 정확도가 22.2% 정도로 매우 낮으므로, 관측자료 확보 및 위성 탐지 등 안개특보제 실시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것.
- ▷ 안개 특보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바, 유관기관과 안개관측망 공동 활용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충분한 시험운영과 철저한 준비 및 정확성을 높인 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0) 기상조절 기술 개발

- ▷ 물부족 해소를 위해 인공강우 실용화가 필요하므로 항공기 등 실험 장비 확보를 통해 인공강우 상용화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기상조절 기술 축적과 함께 인위적인 기상조절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것.

(11) 기상 특보 정확도 향상

- ▷ 기상용 슈퍼컴 도입에도 불구하고 기상특보의 정확도가 낮으며 기상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가 커지고 있는바, 기상특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2) 기상산업진흥원 이사진에 기상사업자 포함

- ▷ 기상산업진흥원의 이사 구성에 당연직 비율이 높고 기상사업자가 배제되어 있는바, 이사진 구성에 기상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할 것.

(13) 기상관측 장비 국산화

- ▷ 라디오존데 추락으로 산악 및 해양에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는바, 기상산업 기술육성 및 환경에 대한 고려, 기상주권 확보를 위해 기상장비를 국산화하고 국산 기상장비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를 늘릴 것.

(14) 장마예보 중단 재검토

- ▷ 장마 시중예보의 예고 없는 중단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바, 시중예보의 실시 중단을 재검토할 것.

(15) 슈퍼컴퓨터 센터 신축 관련

- ▷ 오창 슈퍼컴센터 신축 과정에서 철근 수량 과다 산출 등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안전사고도 발생하였으나 후속 대책이 미비하였는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16) 황사 및 해상기상 예보 정확도 제고

- ▷ 안개특보와 황사, 해상기상 부분 정확도가 낮으므로, 소방방재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해양, 안개, 황사 분야 관측장비 투자를 늘려 예보정확도를 제고할 것.

(17) 낙뢰 예보 서비스 확대

- ▷ 낙뢰로 인한 사망, 부상으로 피해가 많은바, 낙뢰 예보를 위해 R&D를 확대하고 유관기관에 예보 서비스를 확대 공급할 것.

(18) 예보전문인력 역량 강화

- ▷ 예보정확도 제고를 위해 전문 연구개발 인력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훈련을 통해 예보관 역량을 강화할 것.

(19) 민간기상사업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 민간기상사업자가 제공하는 기상분야 응용정보가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12월부터 기상예보 개방도 예정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기상청 차원의 가이드라인 등 대책을 마련할 것.

(20)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 ▷ 항공기상정보 사용료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에 따라 협상이 진행중이나, 유가인상 등 우리나라 항공사들의 적자 상황을 감안하여 물가 인상을 내에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협상을 진행하도록 할 것.

(21) 산악지역 기상정보서비스 확대

- ▷ 주5일제 등에 따른 레저시간의 증가와 함께 국립공원 등에서 안전사고도 늘어나고 있는바, 산악지역 안전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산악 지역에 대한 기상예보 실시방안을 마련할 것.

(22) 국립기상연구소 조직 개편

- ▷ 기상부문의 성장을 위해서는 연구부문의 변화가 필요하나 국립기상연구소의 조직 부문이 30여년간 정체상태인 바, 조직 및 구성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3) 기상콜센터 운영 개선

- ▷ 기상악화시 문의의 쏠림현상으로 콜센터의 응대율이 낮고, 콜센터 직원의 높은 이직율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직 및 인원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4) 신재생에너지 지도 제작 관련

- ▷ 지방자치단체의 앞선 개발의식으로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태양에너지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지도를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부서에 보급하여 개발 지역 선택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할 것.

8. 감사원 감사청구사항(안)

가. 환경부소관 : 없음

나. 노동부소관 : 없음

9. 증인고발 사항 : 없음